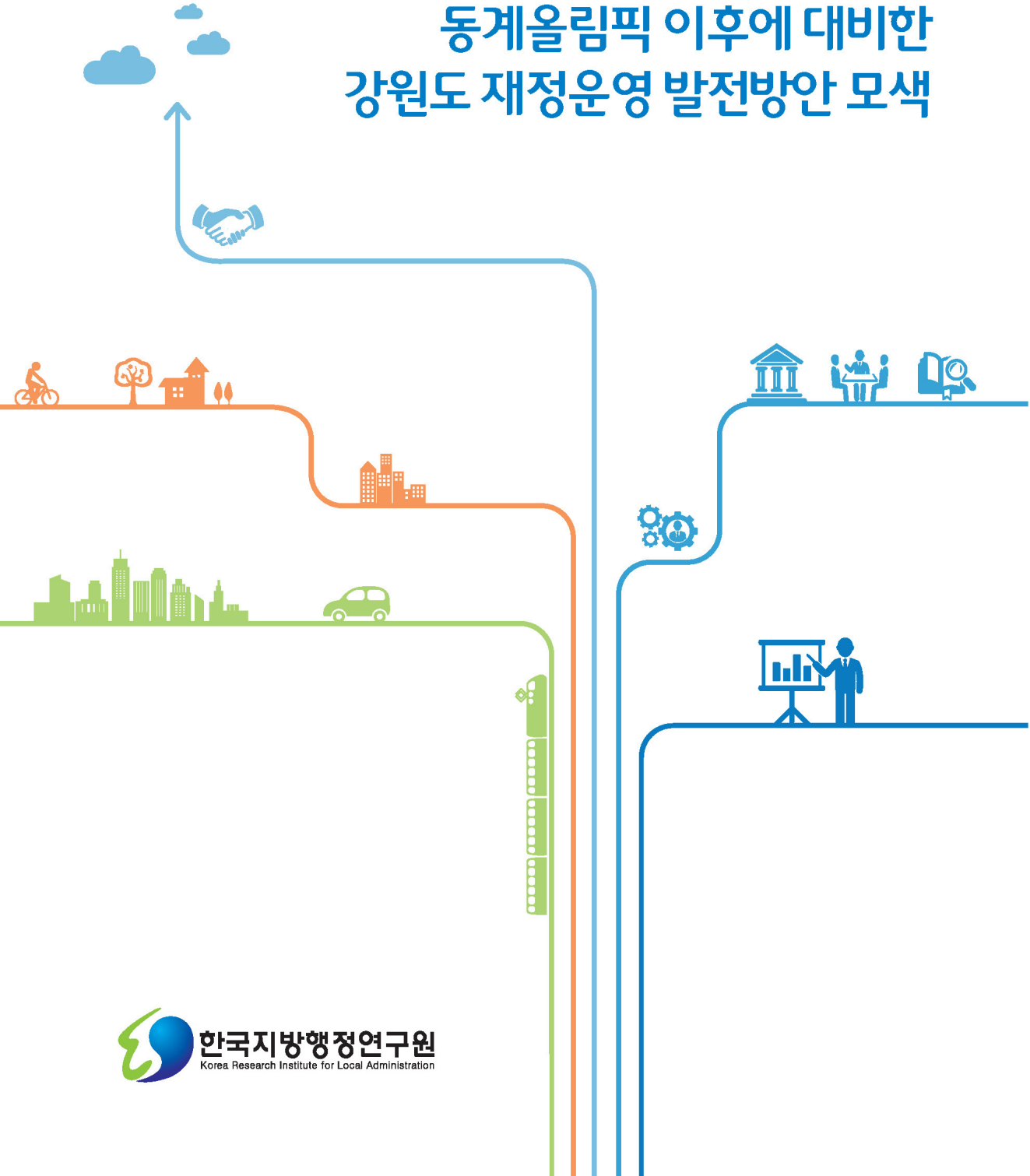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비한 강원도 재정운영 발전방안 모색



연구진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가 결정된 이후 강원도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의 3개 시·군(강릉시, 평창군, 정선군)에서 올림픽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시설 및 접근도로망의 건축은 강원도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어, 강원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동계올림픽 관련사업의 재원투자계획 중 올림픽 직접시설과 문화콘텐츠¹⁾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7,765억원이며, 이 중 강원도는 14.4%인 5,406억원을 지출할 예정임
- 강원도는 이러한 소요예산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2017년 까지 총 7,303억원의 지방채 잔액이 예정되어 있음
-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상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02년 루사, '03년 매미, '04년 매기, '05년 양양산불, '06년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복구를 위해 총 2,1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음
 - 여기에 국가적 행사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또 추가적인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됨

1) 올림픽 직접시설은 경기장 건설, 진입도로 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문화콘텐츠 사업은 문화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자료: 강원도 내부 자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재정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구체적으로는 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재정영향을 분석한 후 올림픽 준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부채관리와 세출절감에 초점을 두고 강원도 자체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함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주요 연구내용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재정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재정영향 분석, 세입증대 방안 그리고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였음
- 강원도의 재정은 지역경제상황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 지방채발행지수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이는 각종 태풍, 장마, 산불 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누적되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의 비중 또한 높았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2011년 이후 강원도의 예산부족액은 2016년도에 가장 많은 2,600억원으로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남
 - 이후 2017년도에 1,800억원, 2018년도 1,200억원, 2019년도에 1,200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인 2019년부터는 올림픽 개최시 건설했던 메인스타디움, 빙상 및 설상경기장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고려했을 때 부족액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 또한 매년 증가하는 사업수요 대비 부족한 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200억원씩의 채무부담행위도 강원도의 재정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재원은 과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원된 바 있는 재원을 탐색하는 방법임
 - 옥외광고물센터 수입은 현재에도 동계올림픽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환경이 변화된 데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대 여지가 남아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은 현재의 지출항목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계올림픽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외부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다른 대안 탐색 방향은 강원도의 지출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지출항목 및 사업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으로 이원화하여 대안을 탐색하였음

□ 정책제언

- 옥외광고물센터 수익 활용 방안
 - 옥외광고물센터의 수익 중 일부는 각종 국제대회와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되고 있음
 - 옥외광고물센터 수익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지원된 액수는 2013년도에 한 번 있었으며, 그 액수는 약 40억원임
 - 평창동계올림픽은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이며, 옥외광고물센터 수입으로 지원되는 타 행사에 비해 작은 행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 일회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 액수도 타 행사의 지원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기준은 2015년 9월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9월 이후에는 새로운 배분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견됨
 -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는 신규 국제행사의 추가, 각 국

제행사별 예산규모의 변경 등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따라 수익금 배분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활용 방안

-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은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한 후 투표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게임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01년~'06년 동안 조성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803억원은 2002 월드컵 개최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경기장건립비 상환에 사용된 바 있음
- 동 재원은 총액이 사전에 결정되는 재원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축소시킬 여지가 없음
- 현행법규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 과거 동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국가적 체육행사를 지원한 바가 있어, 동 재원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활용하는 것이 다소 용이할 수 있음

○ 예산지출 구조조정(인천시의 사례)

- 인천시의 경우도 강원도와 유사하게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지방채 발행액이 2009년 2조 3,343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3조 8,921억원으로 예상되었음
- 인천시는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있음
- 인천시에서 추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식은 몇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구조조정 대상이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며, 일괄삭감과 성과평가를 시기별로 차별화 하였다는 것임
- 접근방법은 전략적 항목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인천시의 사례를 통해 판단할 때, 강원도에서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할 경우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일괄삭감 또는 성과평가를 통해 조정하되 전략적 항목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괄삭감을 할 것인지 또는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성과평가가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접근방법은 전략적 중목을 선택하되 먼저 운영경비와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규모는 5억원 이상의 재정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업 구조조정

-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재량사업,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 강원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 현재 기투자액이 없거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의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목적, 수단, 사업의 중복성 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존속, 재검토, 감축, 우선순위 재조정 등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운영전략

- 국가 및 지역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림픽 개최로 인한 재정상황이 더욱 경직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므로 ① 재정건전성을 객관적 시각에서 정확히 그리고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② 차년도 지방재정의 운용기조 및 전략을 반영하여, ③ 이를 통해 재정위험의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④ 궁극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마지막으로 올림픽 이후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2장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및 재원조달 현황	7
제1절 올림픽 시설 및 정부간 역할	9
1. 올림픽 시설	9
2. 패럴림픽 시설	11
3. 정부간 역할	12
제2절 올림픽관련 시설의 투자현황	13
1. 승인내역	13
2. 연차별 투자계획	16
3. 지방채 현황	17
제3장 재정영향 분석	19
제1절 지역여건 분석	21
1. 소득수준	21
2. 산업구조	23
3. 지역경제	29
제2절 인구변화 분석	31
1. 인구구조 변화 동향	31
2. 고령화 추이	34
3. 생산가능인구	34
제3절 재정현황 분석	36
1. 세입구조	36
2. 세출구조	38
3. 재정능력	42



제4절 지방재정영향 분석	44
1. 채무분석	44
2. 환경변화 분석	45
3. 지방재정영향 분석	47
제4장 올림픽 이후의 재정운영 방안	51
제1절 기본방향	53
제2절 올림픽 준비재원 조달방안	56
1. 옥외광고물센터 수익 활용 방안	56
2. 체육진흥투표권 활용 방안	61
제3절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	64
1. 필요성 및 유형	64
2. 예산지출 구조조정(인천시의 사례)	66
3. 사업 구조조정	75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81
제1절 요약	83
제2절 정책건의	85
1. 옥외광고물센터 수익 활용 방안	85
2. 체육진흥투표권 활용 방안	86
3. 예산지출 구조조정(인천시의 사례)	88
4. 사업 구조조정	89
참고문헌	91



표 차례

<표 2-1> 설상경기장 현황	10
<표 2-2> 빙상경기장 현황	11
<표 2-3> 올림픽 대회관련 총 승인내역	14
<표 2-4> 올림픽관련 시설별 총 승인내역	15
<표 2-5> 문화콘텐츠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15
<표 2-6> 총사업비와 2015년 강원도의 일반회계 재원과 비교	16
<표 2-7> 올림픽 준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연도별 조달 계획	16
<표 2-8> 강원도의 연도별 지방채 현황	18
<표 3-1> 강원도 GRDP 추이	21
<표 3-2> 강원도 1인당 GRDP 추이	22
<표 3-3> GRDP 및 1인당 GRDP 비교(2013년 기준)	23
<표 3-4> 강원도의 산업기반구조(2013년 기준)	24
<표 3-5> 강원도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24
<표 3-6>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산업별 사업체수	25
<표 3-7>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산업별 종사자수	26
<표 3-8> 주요 사업체종사자 구성 비율	28
<표 3-9> 강원도의 산업단지 현황	28
<표 3-10> 강원도의 실업률	29
<표 3-11> 강원도의 최근 5년간 건축허가 동수 및 연면적	29
<표 3-12> 부동산 관련 지수(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지가변동율)	30
<표 3-13> 건설경기(2014. 06월 기준)	30
<표 3-14> 도평균과 강원도의 인구 증감율 비교	31

<표 3-15> 강원도의 인구 유입·유출 변화	32
<표 3-16> 강원도의 인구 변화	33
<표 3-17> 강원도의 5세 연령 구간별 인구 유출입 현황	33
<표 3-18> 강원도의 고령인구비율 추이 및 추계	34
<표 3-19> 생산가능 인구 비율(2013년)	35
<표 3-20> 연도별 생산가능 인구 추이	35
<표 3-21> 강원도의 경제활동관련 지표 추이	36
<표 3-22> 강원도의 세입구조	37
<표 3-23> 성질별 세출구조(총계)	38
<표 3-24> 기능별 세출구조(총계)	40
<표 3-25> 사업별 세출구조(총계)	41
<표 3-26> 자체세입비율의 변동추이 비교	42
<표 3-27> 재정력지수의 변동추이 비교	43
<표 3-28> 지방채무잔액지수의 변동추이 비교	44
<표 3-29> 지방채무상환비율의 변동추이 비교	45
<표 3-30> 강원도의 지방세 수입 추이	46
<표 3-31> 강원도의 인구감소에 따른 세출변동성	46
<표 3-32> 강원도의 예산부족액 전망	47
<표 3-33> 강원도 가용재원 비율의 추이 및 전망	48
<표 3-34> 강원도의 가용재원 현황	49
<표 4-1> 옥외광고 사업수입(2015년 3월말 기준)	57
<표 4-2>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배분 현황 (2015년 3월말 기준)	58
<표 4-3> 옥외광고물센터 수익으로 지원한 국제행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액수의 비교	59



<표 4-4> 일반발행 수익금 배분내역	61
<표 4-5>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내역	62
<표 4-6> 2010년 인천시의 예산 및 부채규모	66
<표 4-7> 아시안게임 사업비	67
<표 4-8>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채 발행액	67
<표 4-9> 2010년도 주요 경직성 경비 절감 현황	68
<표 4-10> 2014년도 예산절감 현황	69
<표 4-11>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조정 결과 ..	71
<표 4-12> 인천시의 예산지출 구조조정 방법 종합	72
<표 4-13> 예산지출 구조조정 방법	75
<표 4-14> 세출 구조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76
<표 4-15> 조사대상 사업 전체 현황	77
<표 4-16> 계획단계에서의 판단기준	78
<표 4-17> 구조조정 대상사업의 판단기준	79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2-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 조직 현황	13
<그림 3-1>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산업별 사업체수 추이	27
<그림 3-2>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산업별 종사자수 추이	27
<그림 4-1> 대안탐색 과정	5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가 결정된 이후 강원도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의 3개 시·군(강릉시, 평창군, 정선군)에서 올림픽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 동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강원도, 개최도시, 유관단체 등 4개 영역의 지원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음
 - 중앙정부는 국무총리실 소관의 대회지원위원회와 문화체육부 소관의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계획의 승인, 대회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강원도 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개최 시·군 동계올림픽 지원단, 개최 시·군 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지역시민 및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올림픽 시설 건설, 교통망 확충, 주민참여,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는 총 15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며 이를 위해 총 13개의 경기장이 필요함
- 이 중 6개 경기장은 신설되고 7개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은 설상경기장 2개 소와 빙상경기장 6개 소로, 알파인스피드, 슬라이딩센터 경기장(봅슬레이, 스킨레톤, 루지 이상 설상),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I, II(이상 빙상) 경기장 등임
 - 기존 시설 중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경기는 보광피닉스 파크, 컬링은

강릉실내빙상장에서 개최되지만 이 시설들은 국제대회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추진할 예정임

- 이처럼 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시설 및 접근도로망의 건축은 강원도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강원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채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동계올림픽 관련사업의 재원투자계획 중 올림픽 직접시설과 문화콘텐츠²⁾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7,765억원이며, 이 중 강원도는 14.4%인 5,406억원을 부담할 예정임
- 강원도는 이러한 소요예산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어, 2017년까지 총 7,303억원의 지방채 잔액이 예정되어 있음³⁾
 - 이를 강원도의 2015년 일반회계와 비교해 보면, 전체 세입(40,340억원)의 18.1%이며, 자체세입(지방세 세입 7,420억원, 지방세외수입 926억원, 총 8,346억원)의 87.5%에 달함
- 강원도는 지역특성상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02년 루사, '03년 매미, '04년 매기, '05년 양양산불, '06년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복구를 위해 총 2,1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음
 - 여기에 국가적 행사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또 추가적인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견됨
-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첫째, 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재정영향을 분석함
 - 둘째, 올림픽 준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함

2) 올림픽 직접시설은 경기장 건설, 진입도로 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문화콘텐츠 사업은 문화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강원도 내부 자료)

3) 이 중 올림픽 개최 준비와 관련해서는 총 1,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임

- 셋째, 부채관리와 세출절감에 초점을 두고 강원도 자체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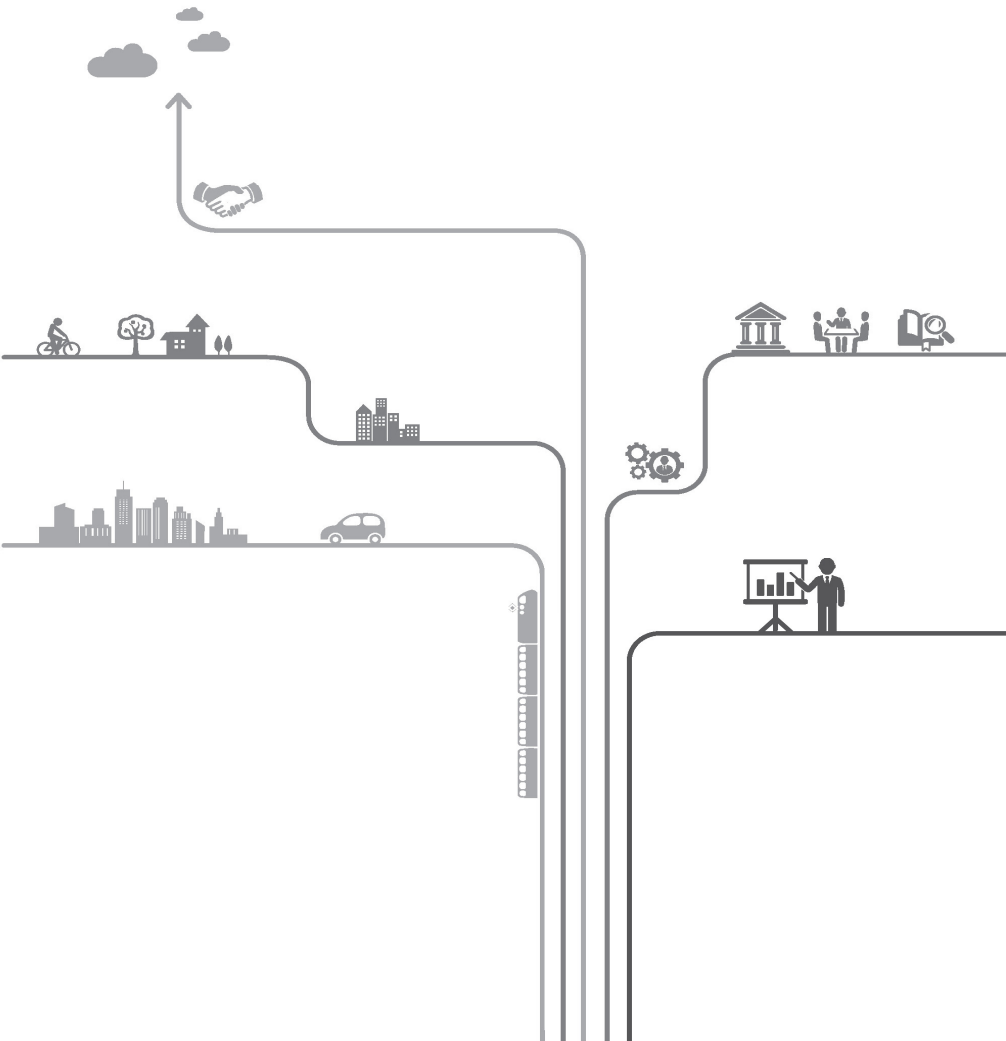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현황분석, 재정영향분석, 대안의 도출 등 3가지로 구분됨
- 현황분석은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시설 건설, 교통망 확충 등에 소요 되는 자원 현황을 탐색함
- 재정영향분석은 기 발행 분 지방채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 되는 재원이 강원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중 재정건전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
 - 이 중 지방채는 강원도에서 발행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되, 재정영향분석에서는 기 발행분 지방채를 포함하여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는 제외하되 강원도에서 채무부담을 보증한 채무는 포함함
- 대안의 도출은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으로 구분하고, 세입측면은 강원도 자체 세입 증대 방안과 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비세의 증액교부 가능성을 모색함
 - 세출은 2015년을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 및 미완료 사업을 대상으로 지연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함
- 현황분석은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 개최 시·군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
- 재정영향분석은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전성 분석방법을 활용함
- 세출 구조조정 사업은 강원도의 관련 공무원 인터뷰와 조사표 조사를 통해 발굴함

제2장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및 재원조달 현황

제1절 올림픽 시설 및 정부간 역할
제2절 올림픽관련 시설의 투자현황



제2장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및 재원조달 현황

제1절 올림픽 시설 및 정부간 역할

1. 올림픽 시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는 2018. 2. 9부터 2. 25일 까지 17일간 개최되며, 100여 개 나라,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⁴⁾
 - 참여예상 인원은 IOC 회원국 100여 개 국 선수·임원 5천여 명과 IOC 패밀러, 각국 NOC, 국제스포츠 관계자, 보도진 등 약 4만 5천여 명 등임
- 올림픽은 평창, 강릉, 정선 등 3곳의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7경기 15종목 약 98개의 세부종목이 치러질 예정임⁵⁾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활용될 시설은 설상경기장과 빙상경기장으로 구분되며, 이 중 설상경기장은 알펜시아, 용평, 정선, 보광 지구에 있는 8개의 경기장이 이용될 예정임
- 8개의 시설 중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활용될 경기장은 6개, 신설될 경기장은 2개로 예정되어 있음
 -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에는 4개의 경기장이 입지될 예정이며, 이 중 기존 시설을 보완하여 활용할 경기장은 3개로서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경기장이며, 신설되는 1개의 경기장에서는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이 개최될 예정임

4) 2018 평창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pyeonchang2018.com)

5)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5년 6월 8일 평창올림픽에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스피드스케이팅, 컬링과 관련해 새로운 세부 종목을 도입하기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스노보드의 남녀 빅 에어, 스피드스케이팅의 남녀 매스타트, 컬링의 남녀 혼성 종목과 스키의 팀 이벤트가 평창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선보일 예정임

- 용평 알파인 경기장 1곳에서는 알파인스키 대회전과 회전 경기가 개최되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보광 스노 경기장은 2개의 기존 경기장을 보완하여 프리스타일스키, 스노보드 등이 개최될 예정임
-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1개의 경기장을 신설하여 알파인스키 활강와 슈퍼G 경기가 계획되어 있음

<표 2-1> 설상경기장 현황

구분	경기장명	경기명	종목명	신설 여부	개최지역	
설상 경기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파인 스키	활강	신설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용평 알파인 경기장		슈퍼G			
			대회전	보완		
			회전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	크로스컨트리		보완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스키점프		보완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바이애슬론		보완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보광 스노 경기장	보광 스노 경기장	프리스타일 스키	Mogul	보완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Aerial		
				Ski Cross		
				HP		
				Slope Style		
보광 스노 경기장	보광 스노 경기장	스노보드	PGS	보완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SBX			
			HP			
			PSL			
			Slope Style			
슬라이딩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신설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자료: 2018 평창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pyeonchang2018.com)

- 빙상경기 시설은 강릉시에 입지하게 되며, 총 5개의 경기장이 이용될 계획임
 - 이 중 1개 시설은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이용하며, 4개 경기장은 신설될 예정임
 -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이용될 시설은 강릉컬링센터이며, 신설되는 4개의 경기장은 경포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 센터 등임

<표 2-2> 빙상경기장 현황

경기장명	경기명	신설여부	개최지역
경포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스피드스케이팅	신설	강릉 코스타ل 클러스터
강릉아이스아레나	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	신설	강릉 코스타ل 클러스터
강릉하키센터	아이스하키 I	신설	강릉 코스타ل 클러스터
관동하키센터	아이스하키 II	신설	강릉 코스타ل 클러스터
강릉컬링센터	컬링	보완	강릉 코스타ล 클러스터

자료: 2018 평창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pyeonchang2018.com)

2. 패럴림픽 시설⁶⁾

- 2018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 외에도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제12회)가 2018. 3. 9부터 3. 18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임
- 패럴림픽에는 50여 개 국에서 3,000여 명의 대회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임
 - IPC 회원국 50여 개 국 선수·임원 1400여 명
 - IPC 패밀리, 각국 NPC, 국제스포츠관계자, 보도진 등 1,600여명
- 동 행사는 올림픽과 동일하게 평창, 강릉, 정선 등 강원도 3개의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며, 6개 종목이 예정되어 있음

6) 2018 평창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pyeonchang2018.com)

- 패럴림픽 종목은 알파인스키, 파라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등임
- 이 중 설상경기는 평창(알펜시아, 용평), 정선,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설상경기가 개최되는 지역은 알펜시아(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용평(알파인스키, 파라 스노보드), 정선(스피드 알파인스키) 등임
 - 강릉에서 개최되는 빙상경기는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등임

3. 정부간 역할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중앙정부, 강원도를 비롯한 개최 자치단체, 민간 협의체로 체계화하여 준비를 하고 있음
- 이 중 중앙정부는 국회와 행정부로 구분하여, 국회는 국회지원특별위원회를, 행정부는 정부지원위원회 및 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비하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행정지원본부, 개최지 시군지원본부, 강원도 의회지원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이 외에도 민간단체에서는 범국민협의회, 범도민후원회, 각급 직능 및 사회단체 후원회 등이 결성되어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음
- 비용측면에서의 정부간 역할 중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경기장 신축 및 접근도로망 건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림 2-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 조직 현황



출처: 2018 평창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3년도 대회준비업무기록집, p. 93.

제2절 올림픽관련 시설의 투자현황

1. 승인내역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정부가 승인한 대회관련시설은 경기장 건설, 접근도로망 확충 그리고 지원시설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1조 4,311억원이며, 이 중 국비가 65.8%, 지방비가 3.5% 그리고 기타 30.6%로 충당이 예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전체 대회관련 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국비와 기타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지방비 중 강원도는 3,098억원⁷⁾, 시·군에서 913억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강원도의 부담분은 전체 예산의 2.7% 수준임

<표 2-3> 올림픽 대회관련 총 승인내역

(단위: 억원, %)

계	국비	지방비			조직위 등
		소계	도비	시군비	
114,311	75,269	4,011(100.0)	3,098(77.2)	913(22.8)	35,031
(100.0)	(65.8)	(3.5)	(2.7)	(0.8)	(30.6)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 각 승인시설별 재원조달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장 건설은 중봉 알파인, 봅슬레이, 스킨레이팅, 루지, 스노보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I, II, 컬링 등의 시설에 총 6,99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
 - 이 중 국비가 75.7%, 지방비가 25.2%의 비율로 조달하고자 하고 있음
 - 다시 말해 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75%에 지방비 25%의 부담으로 조달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부서로 예정되어 있음
- 접근도로망 확충 시설은 광역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망 설치와 경기장 진입로 설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전자는 국비 100%로 건설되며 후자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비를 조달토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총 사업비 94,079억원 중 지방비는 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원이 1,312억원이나 소요될 예정임

7) 당초 올림픽 직접시설 사업비는 3,056억원이었으나 일부 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42억원이 증가된 액수임

- 마지막으로 지원시설은 선수촌, 미디어촌, 급수체계 구축사업, 개·폐회식장 건립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개·폐회식장 건립사업으로 국비 60%와 지방비 40%로 조성됨

<표 2-4> 올림픽관련 시설별 총 승인내역

(단위: 억원, %)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조직위
			계	도비	시군비	
경기장 건설	6,993 (100.9)	5,245 (75.7)	1,748 (25.2)	1,325 (19.1)	423 (6.1)	
접근 도로망	94,079 (100.0)	69,106 (73.5)	1,682 (1.8)	1,312 (1.4)	370 (0.4)	23,291 (24.8)
지원시설	13,239 (100.0)	918 (6.9)	581 (4.4)	461 (3.5)	120 (0.9)	11,740 (88.7)

출처: 강원도 내부자료.

- 이 외에도 문화컨텐츠사업으로 총 23,6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 국비 33.6%, 도비 9.8%, 시군비 8.6% 그리고 기타로 47.7%를 조달하고자 하고 있음

<표 2-5> 문화컨텐츠사업의 자원조달 계획

(단위: 억원,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23,628 (100.0)	7,946 (33.6)	4,329 (18.3)	2,308 (9.8)	2,021 (8.6)	11,278 (47.7)

출처: 강원도 내부자료.

- 결과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는 대회관련 시설비로 3,098억원, 그리고 문화컨텐츠 사업과 관련하여 2,308억원 등 총 5,406억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2. 연차별 투자계획

-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5,439억원은 2015년 강원도 일반회계 총 재원의 13.5%에 달하는 재원임
 - 이를 같은 해 강원도의 자체세입과 비교해 보면 65.2%에 해당하며, 지방세와 비교했을 때에는 73.3%, 그리고 세외수입에 비해서는 587.4% 수준임

<표 2-6> 총사업비와 2015년 강원도의 일반회계 재원과 비교

(단위: 억원)

총세입 (A)	자체세입 (B)	지방세 (C)	세외수입 (D)	투자액 (E)
40,340	8,346	7,420	926	5,439
$(E/A) \times 100 = 13.5\%$, $(E/B) \times 100 = 65.2\%$ $(E/C) \times 100 = 73.3\%$, $(E/D) \times 100 = 587.4\%$				

- 강원도에서는 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직접 시설비 3,056억원, 문화콘텐츠 사업비 2,383억원 등 총 5,439억원을 연차별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음

<표 2-7> 올림픽 준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연도별 조달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⁸⁾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이후
전체	5,439 (100.0)	1,141 (21.0)	1,158 (21.3)	2,094 (38.5)	752 (13.8)	294 (5.4)
직접시설	3,056 (100.0)	658 (21.5)	805 (26.3)	1,423 (46.6)	170 (5.6)	. (0.0)
문화콘텐츠	2,383 (100.0)	483 (20.3)	353 (14.8)	671 (28.2)	582 (24.4)	294 (12.3)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 8) 실제 소요예산액은 5,406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재원투자계획은 5,439억원으로 33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연차별 사업비 조달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사업비 중 가장 많은 재원을 2016년에 조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실제로 연도별 사업비 조달 계획에는 2016년에 전체 사업비의 38.5%를 조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시설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46.6%를 2016년에 조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둘째, 올림픽관련 직접시설은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년도까지 자원마련이 사실상 종결되지만, 문화콘텐츠 사업의 경우는 올림픽 개최 이후인 2018년 이후에도 자원조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경우 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지만, 2016년에는 일시에 많은 자원조달이 요구될 것이며, 일부사업의 경우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3. 지방채 현황

- 강원도의 연도별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6,001억원에서 2017년 7,303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올림픽 개최 이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지방채 발행은 2015년 980억원 그리고 2016년 1,300억원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자원조달이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지방채 상환을 꾸준히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에 잔액이 5천억원을 상회하는 이유는, 2015년과 2016년 발행분의 경우 5년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2021년 이후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강원도는 올림픽이 2018년에 종료되지만 이로 인해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원을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나타남
 - 매년 상환해야 하는 재원은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약 760억원~800억원에 이를 전망임
 - 더욱이 2004년에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도 2020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표 2-8> 강원도의 연도별 지방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잔액	6,001	6,816	7,303	6,981	6,654	6,327	5,958	5,468
발행	980	1,300	500	200	200	200	200	200
상환	631	696	750	776	761	780	778	887

주: 2018년 이후의 발행내역은 지방채발행이 아닌 예수금 항목임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제3장

재정영향 분석

제1절 지역여건 분석

1. 소득수준

-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3년 현재 34조 7천 9백억원으로 도평균(88조 6천 7백억원)의 39% 수준임
 - 이것은 소득이 도평균에 비해서 절반수준으로서 지역경제상황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최근 5년간 강원도의 GRDP 연평균 증가율은 4.5%이며, 예산의 증가율(4.3%)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것은 9개 도의 GRDP 연평균 증가율(5.9%)이나 전국(5.3%)보다 낮은 가운데 예산증가율은 타 도(3.9%)나 전국(3.5%)보다 큰 수준임

<표 3-1> 강원도 GRDP 추이

(단위: 십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GRDP	예산 ¹⁾
전국	1,151,367	1,265,146	1,330,888	1,377,041	1,427,301	5.3%	3.5%
도평균	69,526	77,280	81,211	84,417	88,665	5.9%	3.9%
강원도	29,111	30,628	32,438	33,853	34,790	4.5%	4.3%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통계청, 행정자치부 재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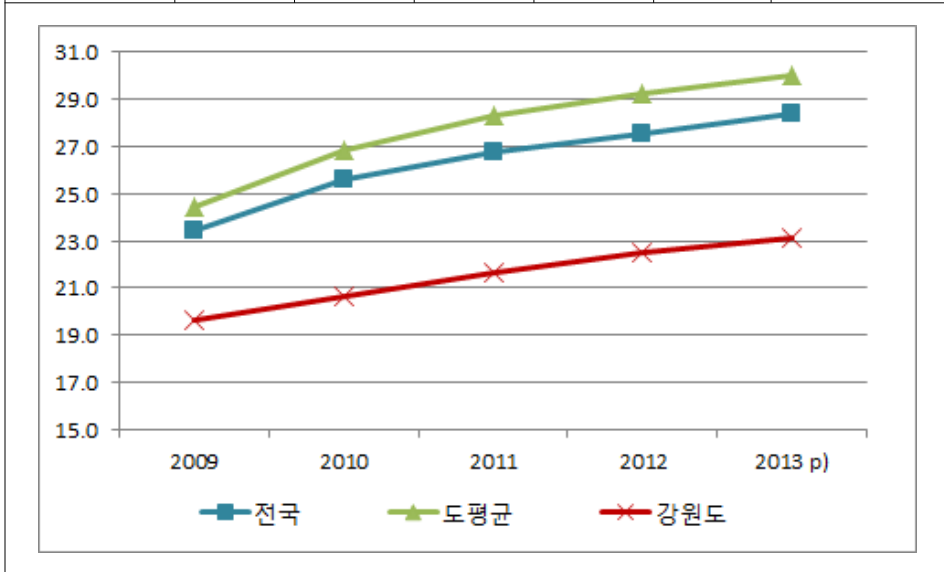
- 강원도의 1인당 GRDP는 2013년 기준으로 2천3백10만원임
 - 이것은 도평균(3천만원)이나 전국의 1인당 GRDP(2천8백40만원)보다 낮은 수치로서 도평균보다는 6.9% 낮고 전국보다는 5.3% 낮은 수치임

- 강원도의 1인당 지역총소득(GRNI, 20.9%)은 도평균보다는 5% 낮고 전국보다는 7.8% 낮은 수치임
- 강원도의 1인당 총생산과 총소득 모두 전국적으로는 물론 도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임

<표 3-2> 강원도 1인당 GRDP 추이

(단위:백만원)

구분	1인당 GRDP					1인당 지역총소득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3p)
전국	23.4	25.6	26.7	27.5	28.4	28.7
도평균	24.4	26.9	28.3	29.2	30.0	25.9
강원도	19.6	20.6	21.7	22.5	23.1	20.9



주: 2013년 기준은 p)잠정치

자료: 통계청

- 강원도의 지역경제상황을 종합해보기 위해 GRDP와 1인당 GRDP에 대해 전국과 도평균, 강원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 3-3>과 같음

<표 3-3> GRDP 및 1인당 GRDP 비교(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전국	도평균	강원도
GRDP	1,427,301,000	88,664,778	34,790,000
인구	51,141,463	3,089,384	1,542,263
1인당 GRDP	28.4	30.0	23.1

주: 1인당 GRDP는 통계청 제공값임

자료: 통계청

2. 산업구조

- 2013년 기준 강원도의 사업체수는 129천개로서 도평균인 216천개를 밑도는 수치이고, 또한 도평균이 전국 사업체수 중 5.8%를 차지하는 반면 강원도의 경우는 3.5%를 접하는 수준에 있음
-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2013년 기준 551천명이고 이를 도평균(1,104천명)과 비교하면 약 절반수준임
 - 강원도는 전국에서 2.9%를 접하는 반면 도평균은 5.8%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도평균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3-4> 강원도의 산업기반구조(2013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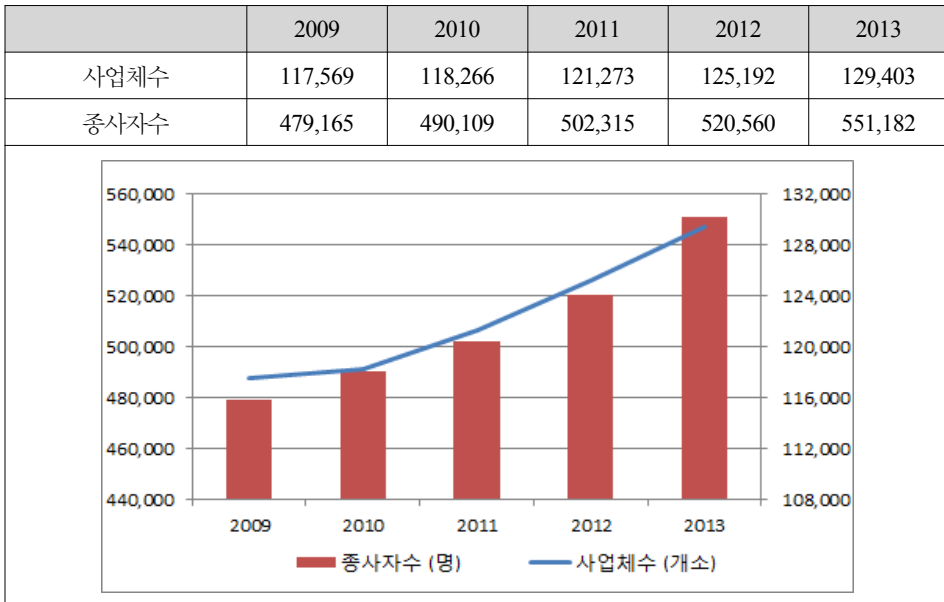
산 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수(천개)	구성비	명(천명)	구성비
전국	3,677	100.0%	19,174	100.0%
도평균	216	5.8%	1,104	5.8%
강원도	129	3.5%	551	2.9%

자료: 통계청(2014년 사업체조사 자료)

-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체수가 2009년에 118천개에서 2013년에 129천개로 증가하였음
 - 종사자수의 경우도 2009년에 479천명에서 2013년에는 551천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3-5> 강원도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개, 명)



- 산업별로 강원도의 사업체수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매 및 소매업의 숫자가 많으며, 다음이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은 그 숫자가 상당히 적음
 - 따라서 강원도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사업체수 증감추이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도매 및 소매업과 협회, 단체, 개인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과 건설업이 소폭 증가추세에 있고,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 또한 증가추세에 있음
- 전반적으로 강원도 내 사업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표 3-6>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산업별 사업체수

(단위: 개)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임업,어업	145	157	171	169	212
광업	141	123	124	133	140
제조업	6,181	6,097	6,236	6,434	6,804
전기,가스,수도	115	126	132	131	136
하수·폐기물,환경	275	293	303	328	352
건설업	4,186	4,308	4,579	4,842	5,444
도매 및 소매업	28,929	29,179	29,694	30,815	31,607
운수업	9,742	9,413	9,976	9,649	10,176
숙박 및 음식점업	33,520	33,428	34,065	34,954	35,714
출판,영상,방송	553	595	616	644	667
금융,보험업	1,441	1,467	1,506	1,526	1,559
부동산,임대업	3,212	3,179	3,307	3,442	3,453
과학,기술	1,673	1,735	1,821	2,033	2,190
사업시설관리,서비스	876	961	1,107	1,263	1,39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808	815	810	805	807
교육서비스업	5,400	5,526	5,530	5,623	5,770
보건,사회복지서비스	3,013	3,304	3,467	3,801	3,994
예술,스포츠,여가	3,597	3,632	3,690	3,840	3,956
협회,단체,개인서비스	13,762	13,928	14,139	14,760	15,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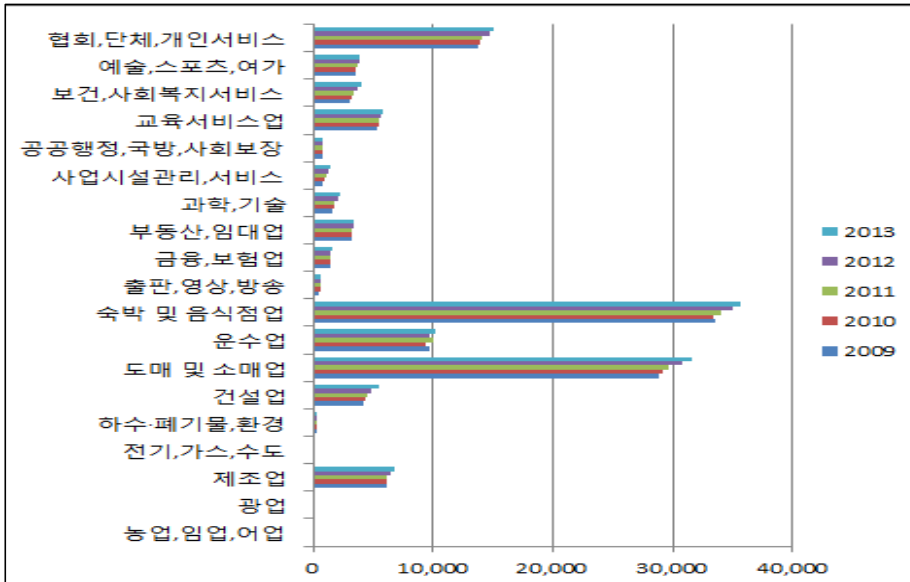
- 강원도의 산업구조를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업종별로 사업체수만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월등히 많고 다음이 교육서비스업의 순서임
 -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도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반면, 광업, 금융·보험업이 감소추세에 있고, 운수업은 2013년도에 살짝 반등했지만 역시 감소추세에 있음

<표 3-7>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산업별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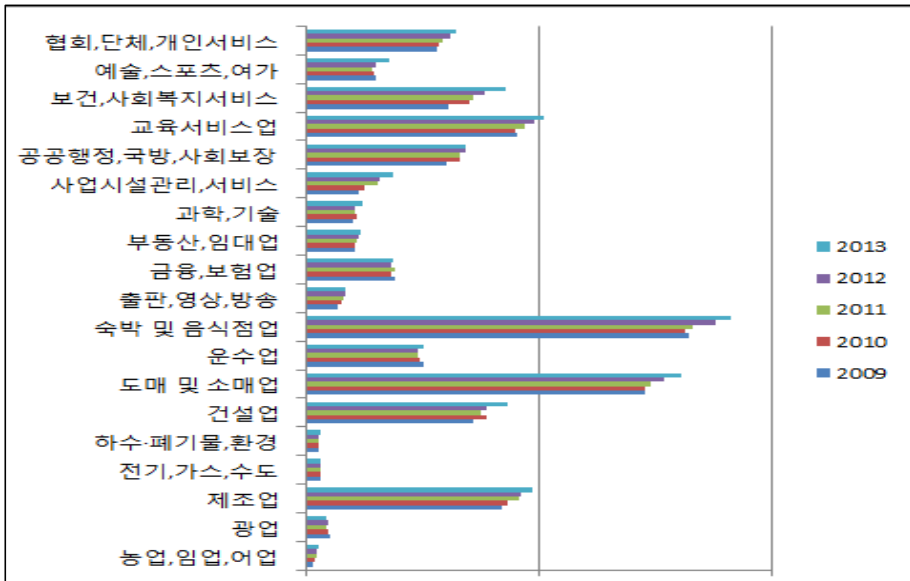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임업,어업	1,786	2,192	2,268	2,364	2,875
광업	5,349	4,796	4,660	4,770	4,620
제조업	42,029	43,113	45,965	46,327	48,426
전기,가스,수도	3,133	3,083	3,347	3,163	3,422
하수·폐기물,환경	2,764	2,779	2,728	2,801	3,373
건설업	35,927	38,974	37,577	38,885	43,412
도매 및 소매업	72,847	72,868	74,042	76,993	80,357
운수업	25,405	24,630	24,300	24,242	25,217
숙박 및 음식점업	82,272	81,471	83,054	88,029	91,027
출판,영상,방송	6,955	7,791	8,231	8,601	8,719
금융,보험업	19,035	18,217	19,052	18,585	18,851
부동산,임대업	10,640	10,593	10,985	11,240	11,828
과학,기술	10,043	10,868	10,771	10,643	12,221
사업시설관리,서비스	11,570	12,467	15,416	15,993	18,60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30,064	33,031	33,012	34,149	34,276
교육서비스업	45,379	44,841	47,050	49,180	51,24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30,629	35,131	35,968	38,554	42,742
예술,스포츠,여가	15,176	14,852	14,291	15,158	17,857
협회,단체,개인서비스	28,162	28,412	29,598	30,883	32,114

<그림 3-1>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산업별 사업체수 추이



<그림 3-2>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산업별 종사자수 추이



- 주요 업종의 종사자비율을 전국평균 및 도평균과 비교해보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국이나 도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도·소매업은 전국평균과 비슷하지만 도평균보다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제조업의 경우 농촌·산간지역이라는 강원도의 특성상 전국평균에 비해 크게 밀돌고 있으며 운수업은 전국평균보다는 낮고 도평균의 수준에 있음

<표 3-8> 주요 사업체종사자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자료
전국	19.4	14.8	10.0	5.6	통계청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
도평균	21.7	13.6	11.6	5.0	
강원도	8.8	14.9	16.6	5.0	

- 2014년 현재 강원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개, 일반산업단지 23개, 도시첨단 산업단지 3개, 농공단지 42개로 구성되어,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상태임

<표 3-9> 강원도의 산업단지 현황

(단위: 천㎡, 개, 명)

구분	단지명	단지수	지정면적	입주업체	가동업체	종업원수
지방 산업 단지	계	69	25,554	1,467	1,279	25,128
	국가	1	4,030	57	34	639
	일반	23	14,334	342	323	7,704
	도시첨단	3	314	38	38	818
	농공	42	6,876	1,030	884	15,967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4년 4분기)

- 강원도의 실업률은 전국평균보다 매년 낮은 상태이지만, 전국적으로 실업율이 감소하는 반면 강원도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따라서 전국평균과의 차이가 2011년 이전에는 1% 이상으로 벌어졌지만 2012년부터는 1% 이내로 좁혀져서 강원도의 고용상황이 전국평균에 비해 양호한 상태에 있음

<표 3-10> 강원도의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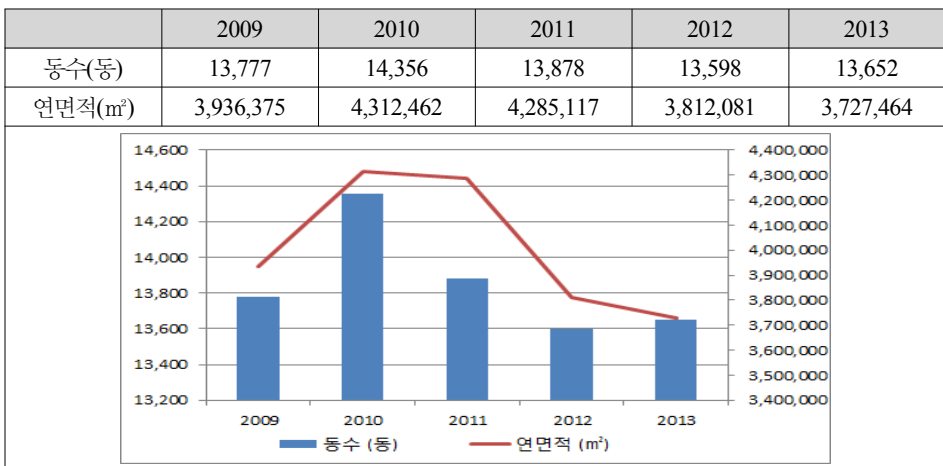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3.6	3.7	3.4	3.2	3.1
강원도	2.0	2.6	2.2	2.5	2.4

자료: 통계청

3. 지역경제

- 강원도의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건축허가 동수와 건축허가 신청 연면적, 부동산관련 지수와 건설경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청에 신청한 건축허가 동수와 연면적의 경우 2010년에는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

<표 3-11> 강원도의 최근 5년간 건축허가 동수 및 연면적



- 부동산관련 지수 중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0.08% 감소하였고 2013년 6월보다는 3.7% 증가하여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소폭 밀도는 상태임
 - 지가변동율은 전월보다 0.14% 증가하였고 2014년 전체적으로는 0.74%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기준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임

<표 3-12> 부동산 관련 지수(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지가변동율)

(단위: %)

구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14. 06 기준)		지가변동율('14. 06 기준)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누계('14.1~'14.06)
전국	0.07	4.8	0.15	0.93
강원도	-0.08	3.7	0.14	0.74

자료: 한국감정원, 통계청

- 강원도의 건설수주액을 살펴보면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195.4%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축허가면적은 감소하였음
 - 특히 건설수주액이 2014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임

<표 3-13> 건설경기(2014. 06월 기준)

(단위: %)

구분	건설수주액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전국	26.2	35.2	24.3	6.9
강원도	195.4	-5.4	-43.2	-14.8

주: 공사지역별 건설수주액(경상)

자료: 통계청

제2절 인구변화 분석

1. 인구구조 변화 동향

가. 인구수 및 증감률

- 강원도의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2003년에 1,527천명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2008년도에 전년대비 증가 이후, 2013년에는 1,542천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평균과 비교해 볼 때 도평균은 매년 소폭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는 도평균에 비해 인구증가 추이가 낮은 수준임
- 물가상승율과 복지사업의 확대, 주민의식 상승에 따른 행정수요 등 사회, 경제, 행정적인 변화와 함께 고려할 때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움

<표 3-14> 도평균과 강원도의 인구 증감율 비교

(단위: 천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도평균	2,812 (0.8)	2,836 (0.8)	2,857 (0.8)	2,880 (0.7)	2,901 (0.9)	2,927 (0.9)	2,953 (0.8)	2,977 (1.8)	3,031 (0.8)	3,057 (0.4)	3,068 (0.7)
강원도	1,527 (-0.8)	1,521 (-0.4)	1,513 (-0.5)	1,505 (-0.5)	1,504 (-0.1)	1,509 (0.3)	1,513 (0.3)	1,530 (1.1)	1,536 (0.4)	1,539 (0.1)	1,542 (0.2)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나. 인구유출입 및 구성비의 추이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유입과 인구유출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많게는 8천여 명부터 적게는 192명까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다만 2010년과 2013년도에는 각각 2,928명과 1,442명이 더 유입되었음
 - 2010년과 2013년도의 변화요인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한 후 향후 인구 관리대책이 필요한 부분임

<표 3-15> 강원도의 인구 유입·유출 변화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 유입 (A)	148,902	155,404	154,941	158,575	158,277	154,877	151,359	146,512	142,104
인구 유출 (B)	157,618	163,457	160,391	158,769	158,469	155,392	148,431	147,191	140,662
차이 (A-B)	-8,716	-8,053	-5,450	-194	-192	-515	2,928	-679	1,442

- 강원도의 인구규모와 그 구성비는 궁극적으로 도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에 활력을 주고 향후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0세~14세 연령층은 2002년(294,416명)보다 2013년(211,085명)에 28.3% 감소하였고,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 연령층도 2002년(1,085,380명)보다 2013년(1,081,639명)에 0.4% 감소하였음
 - 반면 노령인구인 65세 이상 인구는 2002년(158,924명)보다 2013년(249,539명)에 57.0%나 증가하였음
- 즉, 강원도는 생산잠재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방향으로 인구의 구성비가 조성되고 있음

<표 3-16> 강원도의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인구	0-14세	15-64	65세 이상
2002	1,538,720	294,416	1,085,380	158,924
2003	1,527,034	286,932	1,073,428	166,674
2004	1,521,375	280,796	1,065,392	175,187
2005	1,513,110	272,959	1,056,680	183,471
2006	1,505,420	264,097	1,049,311	192,012
2007	1,503,806	256,398	1,045,210	202,198
2008	1,508,575	248,637	1,050,016	209,922
2009	1,512,870	240,997	1,054,643	217,230
2010	1,529,818	233,537	1,069,776	226,505
2011	1,536,448	226,342	1,076,887	233,219
2012	1,538,630	218,891	1,078,045	241,694
2013	1,542,263	211,085	1,081,639	249,539

<표 3-17> 강원도의 5세 연령 구간별 인구 유출입 현황

(단위: 명)

연령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818	555	4,653	712	2,986
0 - 4세	571	204	57	263	304
5 - 9세	307	207	174	98	144
10 - 14세	-150	-187	17	-153	-208
15 - 19세	347	148	1,682	904	1,109
20 - 24세	-2,018	-1,060	-289	-1,549	-1,072
25 - 29세	-2,356	-2,894	-2,532	-3,113	-2,398
30 - 34세	490	-192	1	-300	-75
35 - 39세	864	659	651	509	471
40 - 44세	449	379	643	309	314
45 - 49세	747	645	940	527	679
50 - 54세	1,005	783	1,093	918	1,098
55 - 59세	645	718	1,017	941	1,031
60 - 64세	616	621	688	574	753
65 - 69세	370	296	356	436	511
70 - 74세	31	157	244	220	201
75 - 79세	5	104	-25	116	96
80세 이상	-105	-33	-64	12	28

2. 고령화 추이

- 전세계 및 국가적으로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등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는 지방재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고 2017년까지의 고령화 비율을 추계해 보면 다음 <표 3-18>과 같음
 - 2010년까지는 매년 0.4%, 2013년까지는 매년 0.5%씩 증가해 왔음
 - 2014년 이후 증가율을 추계해 보면 최소한 매년 0.5%의 고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3-18> 강원도의 고령인구비율 추이 및 추계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인구	1,512,870	1,529,818	1,536,448	1,538,630	1,542,263	1,549,711	1,557,195	1,564,716	1,572,273
고령인구 (65세이상)	217,230	226,505	233,219	241,694	249,539	258,344	267,459	276,896	286,666
노인인구 비율(%)	14.4	14.8	15.2	15.7	16.2	16.7	17.2	17.7	18.2

주석: 2014년 이후 총인구 및 고령인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0.005, 0.035)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3. 생산가능인구

- 15세~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보면 2013년 기준 전국 평균이 73.2% 이고 도평균이 70.2%이고 강원도는 70.1%임
 -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낮지만 도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의 생산 가능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음

<표 3-19> 생산가능 인구 비율(2013년)

(단위: %)

전국	도평균	강원도
73.2	70.2	70.1

- 연도별로 생산가능 인구 추이를 보면, 전국과 도평균, 그리고 강원도 모두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년대비 증가율 면에서는 도평균이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국 평균, 강원도의 순서임
-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강원도 입장에서는 생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표 3-20> 연도별 생산가능 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36,256,450 (0.85)	36,989,345 (2.02)	37,222,932 (0.63)	37,343,525 (0.32)	37,457,358 (0.30)
도평균	2,108,816 (1.31)	2,161,875 (2.52)	2,187,546 (1.19)	2,196,881 (0.43)	2,214,121 (0.78)
강원도	1,054,643 (0.44)	1,069,776 (1.43)	1,076,887 (0.66)	1,078,045 (0.11)	1,081,639 (0.33)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 강원도의 경제활동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9.0% → 57.6% → 57.6% → 58.2% → 57.3%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소폭씩 낮아지고 있음
 - 고용률도 57.8% → 56.1% → 56.4% → 56.7% → 55.9%로 2011년과 2012년에 소폭 상승했다가 2013년도에는 다시 낮아지고 있음

- 실업률은 2.0% → 2.6% → 2.2% → 2.5% → 2.4%로서 소폭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강원도의 경제활동관련 지표들도 조금씩 하향세로 변화하고 있음

<표 3-21> 강원도의 경제활동관련 지표 추이

(단위: 천명, %)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활동인구	694	685	691	711	715
취업자	680	668	676	694	698
실업자	14	18	15	18	17
경제활동참가율	59.0	57.6	57.6	58.2	57.3
고용률	57.8	56.1	56.4	56.7	55.9
실업률	2.0	2.6	2.2	2.5	2.4

제3절 재정현황 분석

1. 세입구조

- 강원도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약 30%로서 상당히 낮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약 70% 가까이 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자체세입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2012년까지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에는 큰 폭(2.82%)으로 하락하였음
 - 세외수입의 경우는 2010년에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2011년 이후 소폭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이전재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산간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특별교부세의 지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됨
 - 큰 재난이나 재해발생시 사고 복구나 보상금 지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의 재정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표 3-22> 강원도의 세입구조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비중)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2013 (비중)
계	3,808,242 (100.00)	3,768,179 (100.00)	3,746,527 (100.00)	3,892,483 (100.00)	4,434,404 (100.00)
지방세	501,403 (13.17)	632,069 (16.77)	672,313 (17.94)	714,314 (18.35)	688,592 (15.53)
세외수입	399,323 (10.49)	475,149 (12.61)	401,502 (10.72)	441,589 (11.34)	549,145 (12.38)
지방교부세	583,203 (15.31)	575,548 (15.27)	642,128 (17.14)	710,906 (18.26)	735,918 (16.6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조금	1,974,014 (51.84)	1,899,943 (50.42)	1,850,111 (49.38)	1,900,531 (48.83)	2,119,626 (47.80)
지방채	350,299 (9.20)	185,470 (4.92)	180,473 (4.82)	125,143 (3.21)	341,122 (7.69)

주: 2009~2013년 세입결산

자료: 행자부 재정고 홈페이지

2. 세출구조

가. 성질별 세출구조

- 강원도의 성질별 세출구조(일반회계+특별회계)를 살펴보면 2013년 결산 기준 총세출액은 4조 673억원으로 이 중 자본지출이 1조 7910억원(44.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이전경비(1조 3056억원, 32.10%)의 순서임
- 강원도는 자본지출비중이 높지만 매년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경상이전경비는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본지출비용의 경우 2009년~2013년의 추이를 볼 때 2009년에 가장 높은 비율에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11년도부터 투입되고 있는 동계올림픽관련 투자비용 외에도 다른 투자사업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경상이전경비는 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전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은 강원도의 재정경직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3-23> 성질별 세출구조(총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비중)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2013 (비중)
계	3,601,587 (100.00)	3,590,472 (100.00)	3,584,671 (100.00)	3,652,606 (100.00)	4,067,340 (100.00)
인건비	175,177 (4.86)	184,621 (5.14)	206,227 (5.75)	240,219 (6.58)	250,531 (6.16)
물건비	88,248 (2.45)	92,493 (2.58)	98,705 (2.75)	103,442 (2.83)	110,925 (2.73)
경상이전	1,090,591 (30.28)	1,074,440 (29.92)	1,126,020 (31.41)	1,193,150 (32.67)	1,305,574 (32.10)
자본지출	1,846,971 (51.28)	1,692,488 (47.14)	1,684,509 (46.99)	1,683,101 (46.08)	1,791,057 (44.04)
용자및출자	79,008 (2.19)	178,480 (4.97)	134,800 (3.76)	58,130 (1.59)	84,750 (2.08)

구분	2009 (비중)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2013 (비중)
보전재원	117,314 (3.26)	162,486 (4.53)	124,676 (3.48)	154,740 (4.24)	294,861 (7.25)
내부거래	202,179 (5.61)	202,414 (5.64)	205,349 (5.73)	217,186 (5.95)	225,436 (5.54)
예비비 기타	2,098 (0.06)	3,051 (0.08)	4,387 (0.12)	2,638 (0.07)	4,205 (0.10)

주: 2009~2013년 세출결산

자료: 행자부 재정고 홈페이지

나. 기능별 세출구조

- 2013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강원도의 기능별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25.05%)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농림해양수산(11.66%), 일반공공행정(10.38%), 공공질서및안전(9.164%), 환경보호(8.64%), 국토및지역개발(7.97%) 등의 순서임
 - 강원도의 경우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및안전, 환경보호분야의 비중이 타 도보다 평균적으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 2009년~2013년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비중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문화및관광 부문의 예산 또한 소폭씩 증가추세에 있음
- 반면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수송및교통, 환경보호, 산업및중소기업 등 실제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분야의 예산은 감소하고 있음
 - 특히 기타사업 예산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원전지역의 특성상 찜질방, 해수탕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표 3-24> 기능별 세출구조(총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 (비중)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2013 (비중)
계	3,601,587 (100.00)	3,590,472 (100.00)	3,584,671 (100.00)	3,652,606 (100.00)	4,067,340 (100.00)
일반공공행정	355,569 (9.87)	458,456 (12.77)	452,816 (12.63)	416,314 (11.40)	422,316 (10.38)
공공질서및안전	123,175 (3.42)	148,434 (4.13)	127,421 (3.55)	156,117 (4.27)	372,570 (9.16)
교육	181,796 (5.05)	168,534 (4.69)	171,390 (4.78)	188,054 (5.15)	182,912 (4.50)
문화및관광	167,030 (4.64)	167,365 (4.66)	162,854 (4.54)	177,436 (4.86)	230,853 (5.68)
환경보호	391,144 (10.86)	336,773 (9.38)	407,136 (11.36)	341,059 (9.34)	351,614 (8.64)
사회복지	825,408 (22.92)	810,450 (22.57)	853,216 (23.80)	913,846 (25.02)	1,019,018 (25.05)
보건	73,638 (2.04)	48,871 (1.36)	57,028 (1.59)	57,506 (1.57)	53,239 (1.31)
농림해양수산	503,293 (13.97)	477,755 (13.31)	462,165 (12.89)	478,371 (13.10)	474,113 (11.66)
산업·중소기업	131,272 (3.64)	138,439 (3.86)	137,351 (3.83)	108,621 (2.97)	92,057 (2.26)
수송및교통	286,113 (7.94)	278,996 (7.77)	227,109 (6.34)	221,455 (6.06)	227,870 (5.60)
국토및지역개발	339,184 (9.42)	318,526 (8.87)	267,062 (7.45)	298,292 (8.17)	324,213 (7.97)
과학기술	2,220 (0.06)	2,162 (0.06)	2,261 (0.06)	1,323 (0.04)	1,677 (0.04)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타	221,746 (6.16)	235,712 (6.56)	256,863 (7.17)	294,213 (8.05)	314,889 (7.74)

주: 2009~2013년 세출결산
 자료: 행자부 재정고 홈페이지

다. 사업별 세출구조

- 강원도의 사업별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정책사업비의 경우 '09년 89.62% → '10년 86.77% → '11년 86.46% → '12년 85.06% → '13년 85.30% → '14년 85.78%로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정책사업 중에서 보조사업비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자체사업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타 지자체는 2012년 이후 국고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비중은 커지고 자체사업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강원도는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도에 8.54% → 2014년 9.57%로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향후 재정지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표 3-25> 사업별 세출구조(총계)

(단위: 백만원, %)

		2009 (비중)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2013 (비중)	2014 (비중)
계		3,069,006 (100.00)	3,332,501 (100.00)	3,325,142 (100.00)	3,446,140 (100.00)	3,717,083 (100.00)	3,996,544 (100.00)
정책 사업	소계	2,750,495 (89.62)	2,891,624 (86.77)	2,874,789 (86.46)	2,931,241 (85.06)	3,170,653 (85.30)	3,428,190 (85.78)
	보조 사업	926,984 (30.20)	860,323 (25.82)	822,490 (24.74)	835,413 (24.24)	877,726 (23.61)	934,086 (23.37)
	자체 사업	1,823,510 (59.42)	2,031,301 (60.95)	2,052,299 (61.72)	2,095,828 (60.82)	2,292,926 (61.69)	2,494,104 (62.41)
행정운영경비		234,907 (8.54)	244,034 (8.44)	265,363 (9.23)	284,621 (9.71)	317,997 (10.03)	328,230 (9.57)
재무활동		83,604 (3.04)	196,843 (6.81)	184,990 (6.43)	230,278 (7.86)	228,433 (7.20)	240,124 (7.00)

주: 당초예산 기준

자료: 행자부 재정고 홈페이지

3. 재정능력

가. 자체세입비율

- 강원도의 채무부담율은 크지만 자체세입비율의 경우는 반대로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평균이나 도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은 상태임
- 즉 자체세입의 전국 평균은 매년 25%를 상회하고 도 평균도 20%를 상회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16%를 넘은 이후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음
 - 2009년도에는 11.44%에서 2011년도에 16.81%까지 상승했지만 다시 2013년도에 14.25%까지 낮아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중 하위 25% 정도의 수준으로서 강원도의 좋지 않은 재정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6> 자체세입비율의 변동추이 비교

(단위: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평균	25.19	28.79	29.28	28.05	26.35
도 평균	17.84	23.74	22.75	21.86	20.38
강원도	11.44	15.91	16.81	16.57	14.25

자료: 지방재정분석보고서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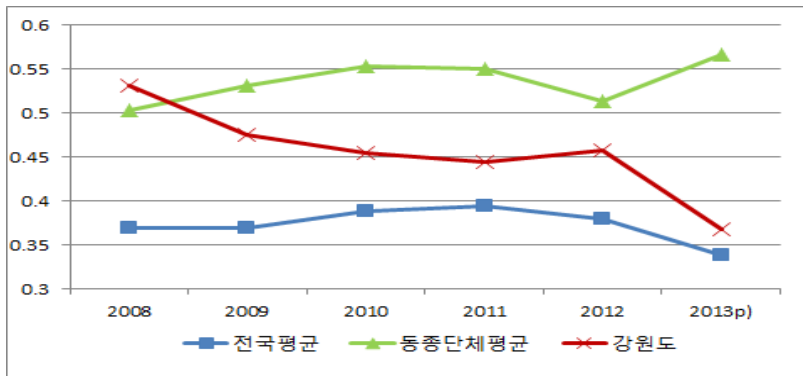
나. 재정력지수

- 강원도의 재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재정력지수의 추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바, 검토 결과 전국 평균보다는 매년 높지만 도 평균보다는 낮은 상태임
 - 즉 전국 평균의 경우 평균 0.38대에 있고 도평균은 0.54대, 그리고 강원도는 0.45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소폭 낮아졌고, 도 평균은 소폭 상승한 반면 강원도는 대폭 하락했음

- 향후 자원보전과 관련하여, 기준재정수요가 상승했거나 기준재정수입액이 감소한 이유 등에 대한 원인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임

<표 3-27> 재정력지수의 변동추이 비교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p)
전국 평균	0.370	0.389	0.394	0.379	0.338
도 평균	0.531	0.554	0.551	0.513	0.566
강원도	0.475	0.454	0.444	0.457	0.368



주: 2013p)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는 임의산정함
 자료: 행자부 재정고 홈페이지

제4절 지방재정영향 분석

1. 채무분석

가. 채무잔액지수의 분석

-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 잔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방채무잔액지수의 경우 2009년도에 56.87%에서 조금씩 증감을 반복하며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8.67% 감소하고 2011년도에 소폭(1.9%) 상승했다가 2012년도에 3.94%, 2013년도에 2.93%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도 이후 동계올림픽을 위해 큰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어 있어 지수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임
- 강원도의 채무는 매년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고 도평균 비해서도 매년 6~10%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각종 태풍, 장마, 산불 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누적되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사업의 비중 또한 높았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재정압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표 3-28> 지방채무잔액지수의 변동추이 비교

(단위: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평균	25.19	28.79	29.28	28.05	26.35
도 평균	17.84	23.74	22.75	21.86	20.38
강원도	11.44	15.91	16.81	16.57	14.25

자료: 지방재정분석보고서 각 년도

나. 채무상환비율의 분석

-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일반재원대비 순지방비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을 나타내는 채무상환비율의 경우도 전국 평균보다 약 두배 높고 도 평균보다도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2009년도에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향후 동계올림픽의 영향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3-29> 지방채무상환비율의 변동추이 비교

(단위: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평균	2.53	2.96	3.06	3.18	3.06
도 평균	6.97	7.34	6.94	6.92	6.01
강원도	8.39	9.06	8.60	7.98	6.97

자료: 지방재정분석보고서 각 년도

2. 환경변화 분석

- 강원도의 인구감소와 부동산경기 등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세와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감소액을 보면 주민세의 경우 매년 53~5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산세의 경우도 매년 16억원~30억원까지 감소하고 있는데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 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도 내 기초자치단체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표 3-30> 강원도의 지방세 수입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628	1,820	1,947	2,333	2,382	3,516
주민세	55	53	54	56	55	57
재산세	1,573 (도시계획세 미포함, 676)	1,767 (도시계획세 미포함, 7696)	1,893 (도시계획세 미포함, 830)	2,277 (도시계획세 미포함, 872)	2,327 (도시계획세 미포함, 1,003)	3,459 (도시계획세 포함)

-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은 세출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아래 <표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나 경상비의 변동폭이 크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특히, 강원도는 2009년을 제외하고 투자비의 증가폭이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재정 압박상황에서는 신규투자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및 유지여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함

<표 3-31> 강원도의 인구감소에 따른 세출변동성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건비 변동	20,185	21,507	21,836	22,768	27,377	27,964
경상비 변동	18,194	21,310	43,317	45,765	44,491	43,839
투자비 변동	16,995	128,792	156,169	196,937	204,175	295,603

주: 성질별 세출총괄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뺀 금액

3. 지방재정영향 분석

가. 예산부족 현황

-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2011년 이후 강원도의 예산부족액은 2016년도에 가장 많은 2,600억원으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남
 - 이후 2017년도에 1,800억원, 2018년도 1,200억원, 2019년도에 1,200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인 2019년부터는 올림픽 개최시 건설했던 메인스타디움, 빙상 및 설상경기장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고려한다면 부족액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표 3-32> 강원도의 예산부족액 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입 ①	3,665,802	3,990,630	4,017,059	5,387,352	5,392,719	5,123,805	5,082,372	5,057,033
경상지출 ②	633,369	665,942	697,685	1,182,914	1,219,554	1,262,376	1,252,003	1,235,199
투자가용재원 ③=①-②	3,032,433	3,324,688	3,319,375	4,204,437	4,173,165	3,861,429	3,830,368	3,821,834
사업수요 ④	3,032,433	3,423,598	3,430,375	4,454,437	4,433,165	4,041,429	3,950,368	3,941,834
재원부족액 ⑤=③-④	120,000	98,910	111,000	250,000	260,000	180,000	120,000	120,000

주: 2012년도 자료는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4년도 자료는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2019년도 자료는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였음

자료: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서(2015년도),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2014년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2012년도)

나. 가용재원 분석

- 강원도의 가용재원비율은 2012년대비 2013년도에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 2014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표 3-34>의 가용재원 현황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지방채의 발행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가 작아지고 있음
 - 또한 매년 증가하는 사업수요 대비 부족한 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200억원씩의 채무부담행위도 강원도의 재정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됨

<표 3-33> 강원도 가용재원 비율의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입예산	3,665,802	3,990,630	4,017,059	5,387,352	5,392,719	5,123,805	5,082,372	5,067,033
가용재원	3,032,433	3,324,688	3,319,375	4,204,437	4,173,165	3,861,429	3,830,368	3,821,834
가용재원 비율	82.72	83.31	82.63	78.04	77.39	75.36	75.37	75.43

주: 2012년도는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4년도는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2019년도는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였음

자료: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서(2015년도),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2014년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2012년도)

<표 3-34> 강원도의 가용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①세입	3,665,802	3,990,630	4,017,059	5,387,352	5,392,719	5,123,805	5,082,372	5,057,033
지방세수입	679,590	696,800	700,600	742,000	745,700	754,450	756,330	766,200
세외수입	358,867	135,158	140,043	298,472	286,332	279,074	281,497	282,341
경상적수입	50,595	36,697	38,342	53,610	50,591	48,217	47,708	47,166
임시적수입	308,272	98,461	101,701	244,862	235,742	230,858	233,789	235,174
이전재원	2,627,345	2,765,326	2,760,609	3,496,630	3,453,464	3,148,361	3,108,993	3,130,343
보통교부세	684,226	725,090	687,060	673,800	687,276	701,022	715,042	729,343
특별교부세	-	-	-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국고보조금	1,943,119	2,040,237	2,073,550	1,722,075	1,759,499	1,713,781	1,782,378	1,782,863
지특회계보조금	-	-	-	507,914	584,322	520,552	466,987	490,913
기금	-	-	-	572,841	402,367	193,007	124,586	107,22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393,346	415,807	850,249	907,223	941,919	935,552	878,149
②경상지출	633,369	665,942	697,685	1,182,914	1,219,554	1,262,376	1,252,003	1,235,199
행정운영경비	303,666	323,066	326,733	330,462	331,617	348,194	358,964	370,701
인력운영비	293,608	313,295	316,292	321,101	323,810	335,956	345,638	356,607
기본경비	10,058	9,771	10,442	9,360	7,807	12,238	13,326	14,094
재무활동	228,757	258,965	306,423	717,059	739,380	753,972	727,550	673,208
내부거래지출	57,777	83,056	121,294	139,884	159,666	173,569	146,119	110,220
보전지출	170,980	175,909	185,128	577,175	579,714	580,403	581,431	562,988
예비비	100,946	83,911	64,529	135,394	148,557	160,210	165,490	191,29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032,433	3,324,688	3,319,375	4,204,437	4,173,165	3,861,429	3,830,368	3,821,834
④사업수요	3,032,433	3,423,598	3,430,375	4,454,437	4,433,165	4,041,429	3,950,368	3,941,834
⑤부족재원(④-③)	120,000	98,910	111,000	250,000	260,000	180,000	120,000	120,000
지방채	120,000	98,910	111,000	250,000	260,000	180,000	120,000	120,000
(채무부담)	4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재정규모(①+⑤)	3,785,802	4,089,540	4,128,059	5,637,351	5,652,719	5,303,805	5,177,033	5,394,656

주 1. 2012년도 자료는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4년도 자료는 2013~2017 중기 지방재정계획, 2015~2019년도 자료는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였음

2. 2012~2014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구분없이 지방교부세로 세입세출을 추계하였으며, 지특 회계보조금, 기금 등의 항목이 생략되어 있음

3. 2012년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가 생략되어 있음

자료: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서(2015년도),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2014년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2012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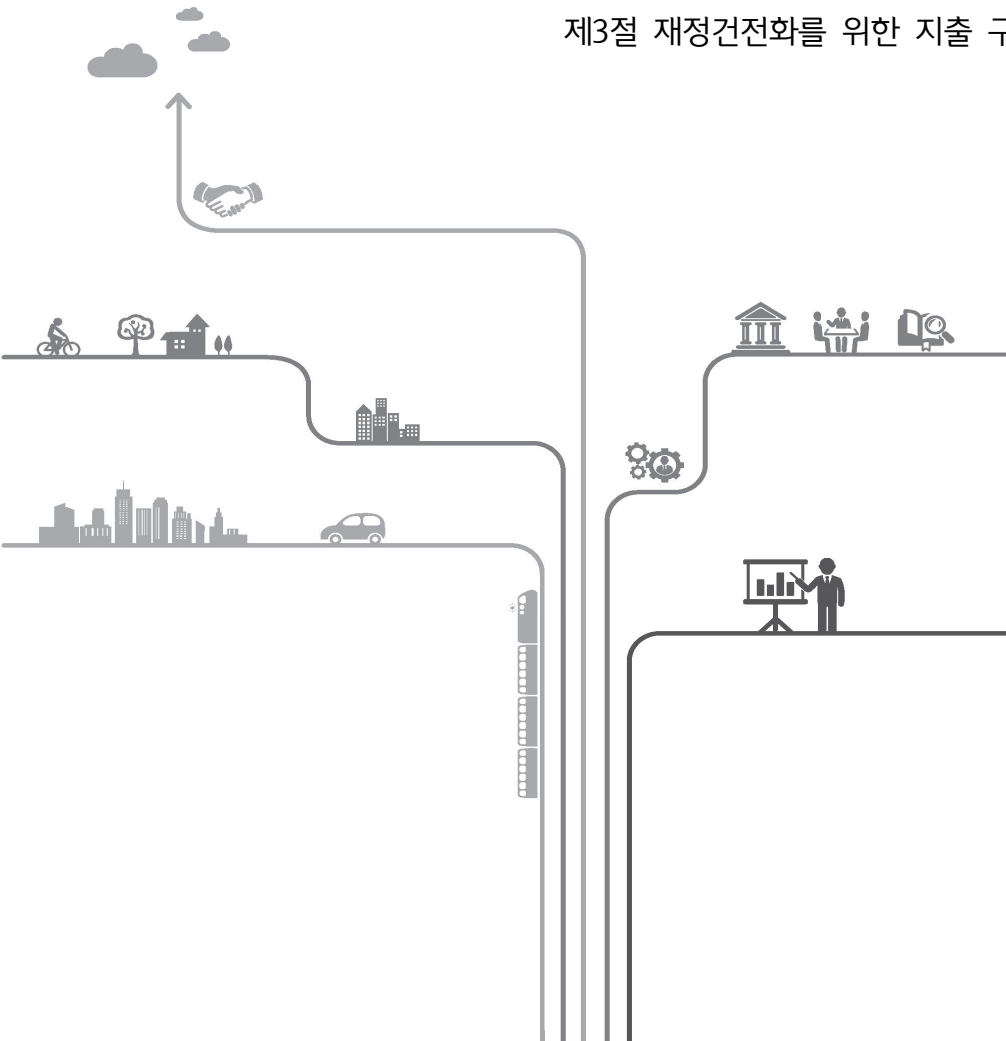
제4장

올림픽 이후의 재정운영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올림픽 준비자원 조달방안

제3절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제4장

올림픽 이후의 재정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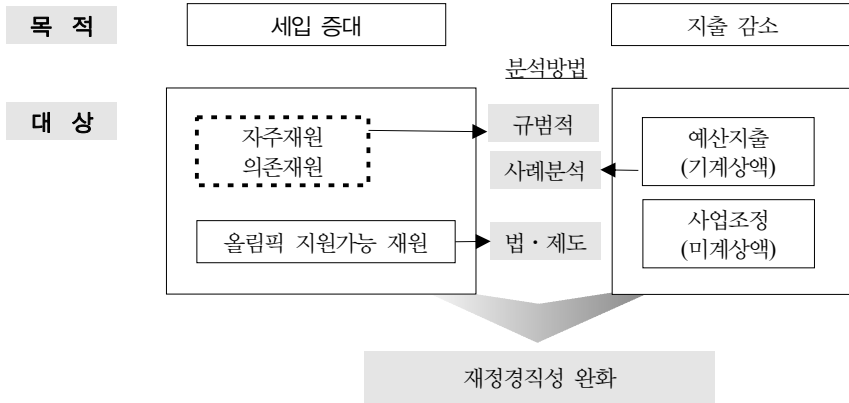
제1절 기본방향

- 본 연구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해 재정적 경직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올림픽 이후 재정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이 있음
- 이를 위해 올림픽 개최 이후의 재정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정경직도가 나타날 지를 분석하였는 바, 채무의 누적과 가용재원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재원확보 및 사업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사업조정 방안을 제시함
- 먼저 재원확보 방안은 자체재원과 외부재원으로 이원화가 가능하며, 이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대에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 신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다시 말해 지방세의 재산과세에 대한 의존은 부동산 경기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가 크게 신장되기 어려운 구조임
 - 더우기 지방세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입확충을 도모할 수 없는 법·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음

- 또 세외수입 역시 대부분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올림픽 준비로 인해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증대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체재원 증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결국 재원증대를 모색하는 방향은 외부 재원으로 모아지게 되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외부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상생발전기금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상생발전기금은 전체 총액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교부액이 증가하게 될 경우 타 자치단체의 재원이 축소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이와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동개최 및 분산개최와 관련된 논의가 있음에도 단독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즉, 올림픽은 단독개최를 주장하면서 재원은 타 자치단체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외부재원 중 지방교부세 및 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의 재원확보도 현 시점에서는 용이하지 않음
- 다음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재원은 과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원된 바 있는 재원을 탐색하는 방법임
 - 여기에는 옥외광고물센터 수입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이 있음
 - 이 중 옥외광고물센터 수입은 현재에도 동계올림픽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환경이 변화된 데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대 여지가 남아 있음
 -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은 현재의 지출항목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계올림픽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외부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재원증대 방안을 강구 하되 옥외광고물센터 수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분석함
- 또 다른 대안 탐색 방향은 강원도의 사업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탐색 하는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으로 이원화하여 대안을 탐색함
 - 그 이유는 실행단계에 있는 사업과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판단이 차별화 되어야 하기 때문임
 - 실제 평가과정에서도 실행단계 사업은 성과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지만,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은 사업수행의 가치가 핵심기준임
-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대안을 모색함
 - 첫째,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동계올림픽 준비시설을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올림픽 이후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상에서 제외함
 - 둘째, 대안은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으로 구분함
 - 세입측면은 옥외광고물센터 수입과 체육진흥투표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세출측면은 올림픽 이후의 재정운영 방안에 초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의 구조조정과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구분함
 - 셋째, 세입측면은 최대한 타 자치단체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안을 모색함
 -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단독 개최를 희망하는 한 타 자치단체의 양해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넷째, 지출축소 방안 중 예산의 구조조정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실제 재정경직성을 경험한 바 있는 자치단체(인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함
- 다만 본 연구는 올림픽 이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함

<그림 4-1> 대안탐색 과정



제2절 올림픽 준비자원 조달방안

1. 옥외광고물센터 수익 활용 방안

가. 현행규정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함(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조)
- 옥외광고의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1조의 4)
 - 이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국제대회와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 ⑤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 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도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수익금 배분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고 있는데, 2015년 9월까지의 수익금의 100분의 50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포물러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등 3개 행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배분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나. 배분액

- 옥외광고물센터의 수입은 지주이용간판 수입과 홍보탑 수입으로 구성됨
 - 이 중 지주이용간판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익이 전체의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동 수입은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4-1> 옥외광고 사업수입(2015년 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44,785	11,554	16,807	19,931	31,211	28,444	29,525	7,313
지주이용간판	143,290	10,704	17,324	19,265	30,715	28,444	29,525	7,313
홍보탑	1,495	850	-517	666	496	-	-	-

자료: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센터 수입으로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3 충주세계박람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 세계물포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총 11개의 국제 행사를 지원하였음

<표 4-2>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배분 현황(2015년 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평창(동계)	평창 (스페셜)	충주	인천	인천(장)	광주
합계	141,859	4,027	3,290	2,382	33,779	4,893	12,376
2009	11,554	-	-	-	2,888	-	-
2010	16,807	-	-	-	3,361	-	-
2011	19,931	-	175	-	1,563	-	439
2012	31,211	-	3,115	-	7,313	-	4,921
2013	28,444	4,027	-	2,382	7,760	981	2,518
2014	29,525	-	-	-	10,894	3,912	842
2015	4,387	-	-	-	-	-	3,656
구분	대구	경북문경	여수	세계자연	물포럼	지자체	센터
합계	14,967	2,112	14,023	2,147	1,164	26,131	20,568
2009	2,888	-	2,310	-	-	1,941	1,527
2010	5,042	-	3,361	-	-	2,820	2,223
2011	7,307	-	4,237	501	-	3,347	2,632
2012		-	4,115	1,646	-	5,658	4,443
2013		273	-	-	205	5,767	4,531
2014		1,181	-	-	886	6,598	5,212
2015		658	-	-	73	-	-

자료: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 옥외광고물센터 수익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원한 액수는 2013년 한 번 밖에 없으며, 그 액수는 약 40억원임
-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는 2009년부터 동 행사가 개최되는 2011년 까지 3개년 동안 총 149억원이 지원되었음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2009년부터 경기가 개최되는 2014년까지 매년 지원되었으며, 지원액수는 총 337억원임
-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은 행사가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이며, 옥외광고물 센터 수입으로 지원되는 타 행사에 비해 작은 행사로 보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일회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 액수도 타 행사의 지원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동 재원으로 지원한 국제행사 중 평창동계올림픽보다 많은 액수가 지원된 행사는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5개 대외임
 - 이 중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평창에 비해 3.72배, 여수세계박람회는 3.48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8.39배,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1.22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3.07배나 많은 액수가 지원되었음
- 이러한 국제행사대회의 지원 상황은 향후 지원액수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 발생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원을 보다 증대해야 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3> 옥외광고물센터 수익으로 지원한 국제행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액수의 비교

(단위: 백만원)

평창	대구	인천	인천	광주	여수
4,027	14,967	33,779	4,893	12,376	14,023
1.00	3.72배	8.39배	1.22배	3.07배	3.48배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확대 배분 가능성 타진

- 현재의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기준은 2015년 9월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9월 이후에는 새로운 배분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견됨
-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는 신규 국제행사의 추가, 각 국제 행사별 예산규모의 변경 등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따라 수익금 배분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확대 배분 가능성 검토
 - 첫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2011년 IOC에 제출한 유치신청서에는 8조 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2015년 현재 13조원으로 증대되었음
 - 이는 옥외광고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사유인 “예산규모의 변경 등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배분액 증대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수익금의 배분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 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총 1,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고 있음
 - 비록 배분기간은 국제행사가 끝나는 기간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동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이 지방채는 향후 10년동안 상환해야 함
 - 그러므로 행사는 종료되었으나, 재정적으로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수익금의 배분기간 연장이 필요함
- 따라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물 수익금의 배분은 배분액이 증대되어야 하고 배분기간도 연장될 필요가 있음

2. 체육진흥투표권 활용 방안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개념

-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은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투표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게임을 의미함
 - 즉, 현행법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 규정하고 있음(체육진흥법 제2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발행횟수, 발행대상종목, 환급금 및 수익금 배분 등 모든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투표권을 발행하여 얻은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음

나. 체육진흥투표권 배분액 현황

- 체육진흥투표권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체육진흥법 제22조)
- 이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78%),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10%), 문화·체육사업(7%), 공공체육시설개보수(5%) 등에 각각 배분되고 있음

<표 4-4> 일반발행 수익금 배분내역

(단위: 백만원, %)

배분대상	계	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월드컵축구 대회경기장 건립비	국민체육진 흥 기금	경기주최단 체지원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공공체육시 설 개·보수	
배분율	100	-	-	78	10	7	5	
배분 내역	계	3,525,480	622	180,300	2,577,578	352,548	296,300	118,132
	'01	712	71	285	214	71	71	-
	'02	5,508	551	2,203	1,652	551	551	-
	'03	7,068	-	3,534	2,120	707	707	-

배분대상	계	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월드컵축구 대회경기장 건립비	국민체육진 흥 기금	경기주최단 체지원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공공체육시 설 개·보수
'04	34,660	-	17,330	10,398	3,466	3,466	-
'05	114,230	-	57,115	34,269	11,423	11,423	-
'06	231,962	-	99,833	85,737	23,196	23,196	-
'07	352,178	-	-	281,742	35,218	35,218	-
'08	416,517	-	-	333,213	41,652	41,652	-
'09	487,674	-	-	365,756	48,767	48,767	24,384
'10	535,421	-	-	417,628	53,542	37,480	26,771
'11	506,568	-	-	395,123	50,657	35,460	25,328
'12	832,982	-	-	649,726	83,298	58,309	41,649

자료: <http://www.sportsbiz.or.kr>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년간 체육진흥투표권을 증량발행하고 있음
- '01년~'06년간 조성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803억원은 2002 월드컵 개최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경기장건립비 상환에 사용되었음

<표 4-5>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내역

(단위: 백만원, %)

배분대상	계	국민체육진흥 기금	대회조직위 지원	경기주최단체 지원	
배분율	100	15	75	10	
배분내역	계	68,742	9,882	52,272	6,588
	'11	35,160	5,274	26,370	3,516
	'12	33,582	4,608	25,902	3,072

자료: <http://www.sportsbiz.or.kr>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활용 가능성 타진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활용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총액이 사전에 결정되는 재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니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축소시킬 여지가 없음
 - 이에 따라 동계올림픽 단독 개최로 인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 둘째, 현행법규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 현행 체육진흥법에서는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1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과거 동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국가적 체육행사를 지원한 바가 있어, 동 재원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활용하는 것이 다소 용이할 것임

-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 제5조 (기금의 설치 등) (1)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각각 대회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소결

-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으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월드컵대회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가적 스포츠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은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도 국가적 스포츠행사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동 행사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큰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지원규모도 제고될 필요가 있음

제3절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1. 필요성 및 유형

- 올림픽 개최 이후 재정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와 재정위험성(fiscal risk) 관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 이후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공간(fiscal space)를 만들어야 함
- 강원도의 경우도 올림픽 이후 재정적 경직성이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재정지출, 채무, 재정수지 등에서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
-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본원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현대 행정은 행·재정환경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세출은 연도간 풍선효과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구조조정된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인 방안은 세입확충임

- 다만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지방채의 발행, 경기침체로 인한 획기적 세수 확보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세출 구조조정은 유익한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세입증대와 동시에 세출절감을 병행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압박을 탈출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음
- 지출 구조조정이란 지출절감을 통한 자원조달을 의미함
 - 이러한 구조조정은 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 새로운 지출을 위한 재정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가정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대안임
-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은 기존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아니나 향후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지에 따라 예산절감과 사업절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할 경우, 일단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아직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구조조정인지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는 있음
 - 그러나 구조조정의 목적이 강원도에서 올림픽 이후의 재정운영 건전화 제고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조정보다는 향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아직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예산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사업조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 이 중 예산지출 구조조정은 유사한 재정압박에 시달렸던 인천시가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

- 사업 구조조정은 사업 착수시기 지연, 사업량 감축,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자원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강원도의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착수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탐색함

2. 예산지출 구조조정(인천시의 사례)

가. 아시안게임 사업비 및 자원조달 방법

-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던 2010년의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모두 합쳤을 때 7조 1,076억원이었음
- 같은 해 인천시의 총 부채는 3조 1,026억원으로, 이 중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발행액이 7천억원이며,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발행액이 320억원이었음
 - 2010년 인천시의 총 부채규모는 총 예산액의 43.6%이며, 일반회계 예산의 75.1% 수준임

<표 4-6> 2010년 인천시의 예산 및 부채규모

(단위: 억원, %)

예산		부채		비고
구분	예산액	구분	부채액	
합계(A)	71,076	소계	8,468	(C/A)×100: 43.6
일반회계(B)	41,311	아시안게임	7,000	
특별회계	29,756	도시철도	320	
공기업특별회계	15,817	상환	785	(C/B)×100: 75.1
기타특별회계	13948	잔액	31,026(C)	

자료: (정태욱, 2011)과 대인천비전위원회 업무보고자료(2010)에서 발췌

-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조 9,399억원으로 계획되었음

- 경기장 건설 1조 5,190억원, 지원본부 운영 2,42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 1,436억원, 장애인아시아경기 지원비 139억원, 실내무도아시아경기 지원 208억원 등임

<표 4-7> 아시안게임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사업비
총계	19,399
경기장 건설	15,190(109,446)
지원본부 운영	2,426
조직위원회 운영	1,436(5,454)
장애인아시아경기 지원	139
실내무도아시아경기 지원	208

주: ()안은 총 사업비, 이후 토지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로 3,500억원이 더 소요되었음

- 인천시에서는 아시안게임에 소요되는 사업비 2조 2천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계획하였음
 - 이 외에도 당초 2018년까지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지방채도 2,612억원이 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는 총 2조 1,6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아시아경기대회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4년 단축하여 2014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었음

<표 4-8>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채 발행액

(단위: 억원)

구분	2009년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발행	8,386	8,468	4,886	3,686	3,766	2,365	-	-
A·G	1,850	7,000	4,470	3,270	3,352	2,060	-	-
도철	289	320	416	416	416	305		
상환	699	785	1,062	1,313	2,259	2,174	2,856	36,065
잔액	23,343	31,026	34,850	37,223	38,730	38,921	36,065	-

자료: 대인천비전위원회 업무보고자료(2010)

- 상기 두 가지 사업과 기 발행 지방채를 포함할 때,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9년 2조 3,343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 3조 8,921억원으로 예상되었음
- 더우기 2016년 이후에도 변제해야 할 지방채가 3조 6,065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
 - 그 결과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당장의 현금 지출은 크지 않았지만, 경기가 종료되는 2015년부터는 이후 15년에 걸쳐 매년 4,000억원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나. 예산지출 구조조정 방법

- 인천시에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한 예산절감 방법은 크게 아시아게임 개최 이전, 개최시점 그리고 개최 이후의 시기에 따라 차별화되어 추진되었음
- 먼저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이전인 2010년에는 아시안게임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체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당장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지 않아도 되는 시기임
 - 다만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향후 재정부족이 명확히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지출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상존해 있었음

<표 4-9> 2010년도 주요 경직성 경비 절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	2009	절감율
계	113,720	156,976	27.6
공공운영비	57,970	65,795	11.9
자체행사비	4,833	6,238	22.5
업무추진비	3,816	4,087	6.6
민간보상금	2,307	4,929	53.2
민간단체보조	19,109	36,000	46.9
자산취득비	26,685	39,927	35.7

자료: 정태옥(2011)

-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세출예산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재량적 지출예산을 중심으로 절감이 이루어졌음
 - 둘째,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 셋째, 전년대비 20% 이상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넷째, 민간보상금과 민간단체보조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강력한 절감이 단행되었음
- 다음으로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시점인 2014년에는 직접 아시아게임을 개최하면서 누적된 지방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입증대 및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음
 - 실제로 예산삭감 외에도 공유재산 매각, 대규모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등 세입측면에서의 대안들이 동원되었음
 - 둘째,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량적 지출예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 셋째, 재량적 지출예산에 대한 삭감은 일괄적 삭감 방식을 동원하였음
 - 넷째, 이전단계에서 이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삭감이 있었기에 이를 대상으로 다시 삭감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직성 경상경비, 인건비 등 특정예산 항목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음

<표 4-10> 2014년도 예산절감 현황

구분		삭감수준	비고
예산 구조 조정	경직성 경상경비	1,200억원	15% 일괄삭감
	간부직 수당 삭감		
	산하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예산삭감		
공유재산 매각		1조 5천억원	- 송도 6·8지구 부지 및 인천고속터미널 매각(1조 2천억원) - 북항배후도시 매각(3천억원)

구분	삭감수준	비고
대규모 사업 공사기간 연장	유동성 확보 (4천억원)	- 도시철도 2호선 완공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
기타		- 시민단체에 재정상황 공개

-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이후인 2015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상환시기 도래, 도시철도 건설 등을 위해 발행한 기존 채무 등의 원리금 상환액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 세입으로 법적·의무적 지출 경비에만 대응하는데도 약 5,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시기임
- 이 시기에도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다양한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재량적 지출예산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둘째, 재량적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5억원 이상 재정사업과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였음
 - 셋째, 재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시에 기존의 방식인 투입대비 산출 즉 효율성 위주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 넷째, 지표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 삭감, 통합, 축소 등을 단행하였음
 - 다섯째, 이전연도인 2014년에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방보조사업이 다시 포함되었음
 - 실제로 2015년에는 보육, 취업, 노인 및 장애인관련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조정이 추진되었음

<표 4-11>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조정 결과

구분		삭감수준	비고
전액 삭감	보육관련	306건 71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100만원) 전액 삭감: 80억원 · 한부모 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6억 7천만원 · 임신부 건강검진비 지원: 2억 5천만원 · 임신부 영양제 보급: 1억 1천만원 ·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4억원
	취업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16억(전액 삭감) · 직업훈련: 4억 5천만원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원: 1억 5천만원 · 청년근로자 취업·진학 프로젝트: 1억원
	노인·장애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개보수: 3억원 · 노인인력센터 사업개발비: 1억원 ·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체험홈: 2억 4천만원 · 점자도서관: 7천만원
감액		776건 92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교통카드 활성화 사업: 49억원에서 15억원 ·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12억원에서 7억원 · 방송홍보비: 26억원에서 19억원 ·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300만원), 50% 삭감

다. 강원도에서의 활용방안

- 인천시에서는 재정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시안게임 개최 시기를 전후로 다양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는데, 모든 시기에 공통적으로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하였음
 - 삭감방식은 개최 시점까지는 일괄삭감 그리고 개최 이후에는 성과평가를 적용하였음
 - 또 모든 시기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항목을 선정하여 10%에서 20%까지의 조정을 추진하였음

<표 4-12> 인천시의 예산지출 구조조정 방법 종합

구분	개최 이전	개최시점	개최 이후
구조조정 대상	재량적 지출	재량적 지출	재량적 지출
삭감방식	일괄삭감	일괄삭감	성과평가
전략적 항목	재량적 지출 전체 (지방보조사업)	경상운영비, 수당, 산하공기업, 출자출연기관	5억원 이상 재정사업,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지방보조사업
조정율	20% 이상	15%	10%, 통합 및 축소

- 인천시에서 추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식은 몇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구조조정 대상임
- 예산지출의 성격을 법적·의무적 경비와 재량적 지출로 구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절감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인식됨
- 두 번째 특징은 삭감방식이 일괄삭감인지 아니면 성과평가를 기초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임
 - 인천시의 경우 개최시점까지는 일괄삭감을 그리고 개최 이후에는 성과평가에 의한 조정방식을 적용하였음
 - 물론 일괄삭감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도 성과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부 성과평가가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성과평가를 기초로 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과정보의 활용이 미약할 수 밖에 없음
 - 이 경우 성과정보의 사용이 미약한 일괄적인 예산삭감 방식은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추진된 예산삭감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박노옥, 2013)
 - 반면에 성과정보를 활용한 예산삭감 방식은 평소에 성과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단기간에 생산하여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으나 절감효과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박노옥, 2013)

- 세 번째로 전략적 항목의 선정으로, 이 방법은 모든 계속사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삭감하는 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단기간에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에서도 일괄삭감을 하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나타난 인천시의 사례를 통해 강원도에서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할 경우,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일괄삭감 또는 성과평가를 통해 조정하되, 전략적 항목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괄삭감을 할지 또는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성과평가가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세출의 구조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그리고 단기간에 추진하게 되면 그 효과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결과 부작용의 속출과 더불어 삭감했던 지출 등을 복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성과정보의 축적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단기간에 대폭 이루어지는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성과정보의 활용이 미흡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경향이 높음
 - 이러한 구조조정의 경우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폭적인 재정문제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식임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일괄삭감을 추진하고, 향후 성과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전략적 종목의 선택과 관련하여 전략적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모든 계속사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삭감하는 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단기간에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예산삭감 적용대상의 모수가 작으므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전략종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삭감함
 - 일 예로 조직의 인건비, 수당, 운영경비 등을 일정비율 삭감하는 방식임
 - 공공부문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타 부분의 절감에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조정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함
 - 운영경비의 삭감은 상당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고 운영경비 절감만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작아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절감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 즉, 규모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을 선택하되, 인천시와 유사하게 5억원 이상의 재정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공석이 생길 경우 인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 이 방법은 기존인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용이한 방식임
 - 투입의 통제(특정항목의 지출을 축소): 출장경비나 외주사업 등을 축소 하는 것과 같이 특정행태의 활동이나 지출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식임
 - 기타 민간위탁 서비스의 재조정: 민간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계약, 인증제도 등을 통한 성과관리의 강화방식임
 -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확보와 수행기관간의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사업 대행기관이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해집단화하여 제도개선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해 둘 부분은 주민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주민에게 강원도의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마련하며, 구조조정 추진시기는 예산안 편성 이전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표 4-13> 예산지출 구조조정 방법

구분	내용
구조조정 대상	- 재량지출
삭감방식	- 단기: 일괄삭감, 장기: 성과정보 활용
전략적 항목	- 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 - 5억원 이상 재정사업, 5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기타	- 인원충원 보류, 투입 통제, 민간위탁 재조정
순응확보 방법	- 재정상황 공개, 예산안 편성 이전단계에서 조정 - 공공부문의 인건비 먼저 조정

3. 사업 구조조정

가. 대상

-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강원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 구조조정의 주체가 강원도인 바, 강원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때 구조조정의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경우도 동일한 이유에서 재량적 지출예산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음
 - 둘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은 강원도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시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강원도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함
- 다만 국고보조사업 중 강원도가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응모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사업에 포함함
- 셋째, 강원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구조조정의 목적이 올림픽 이후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015년 현재부터 추진이 계획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계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제고될 수 있음
- 넷째, 2015년 현재 기투자액이 없거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현시점에서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의 경우에는 기투자된 만큼 오히려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

<표 4-14> 세출 구조조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분야	고려대상	대상사업
자율성 측면	현실화 가능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
		자체재원 사업
시기적 측면	사업선정의 용이성 재원낭비의 최소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
		기투자액이 없는 사업

- 강원도 중기재정계획상에 반영된 사업 중 자체사업이면서 2015년 현재 기투자액이 전혀 없는 사업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등 8개 분야 총 68건으로, 사업비는 2조 4,441억원임)

- 이 중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사업이 18건(2,724억원)으로 건수는 가장 많으나, 총 사업비로는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 7,17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15> 조사대상 사업 전체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건수	총 사업비	시도비
전체	68	2,444,174	2,444,147
문화 및 관광	17	272,478	272,451
환경보호	3	15,500	15,500
사회복지	10	717,048	717,048
보건	1	7,500	7,500
농림해양수산	18	470,193	470,193
산업·중소기업	6	245,373	245,373
수송 및 교통	8	127,569	127,569
국토 및 지역개발	3	588,513	588,513

나. 판단기준

- 강원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을 구조조정 한다는 의미는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존치 또는 우선순위의 조정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것임
 - 따라서 계획단계의 사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정부사업을 계획단계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함
 - 사업을 판단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음
 - 손희준(2005)은 사업의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목표의 적합성과 계획내용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평가에서는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목적, 수단, 중복여부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9) 각 분야별 세부사업 목록은 부록을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평가¹⁰⁾에서는 계획, 집행, 성과 등 3단계 체계로 평가대상 영역을 구분하고, 계획단계에서는 목적, 수단, 중복, 성과목표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 OMB에서는 사업목적과 설계, 전략계획으로 구분한 후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설계의 건전성 그리고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을 기초로 구분되어 있음

<표 4-16> 계획단계에서의 판단기준

평가 기제	평가기준	착안사항
손희준	목표의 적합성	-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 정책목표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이 충실히 구비되어 있는지 -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조,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국고보조금 평가기준	목적	-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지
	수단	-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유사중복	-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지	
자율평가	목적	-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시군 또는 민간 등 자체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수단	-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유사·중복	-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성과체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OMB	목적 및 설계	- 사업목표가 분명한가 - 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문제, 관심, 수요로 설계되었는가 - 주, 지방정부 혹은 민간부문과 중복되지 않게 설계되었는가 - 사업설계가 사업의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저해하지는 않는가 - 사업의 대상집단이 명확히 정의되고, 자원이 수혜자에게 적절히 배분될 것으로 기대되는가
		전략계획

10) 전라북도의 자율평가 기준임

- 각 기제별 세부 착안사항을 살펴보면, 목적, 수단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 등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 강원도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목적, 수단, 사업의 중복성 등을 기초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 기제에는 성과관리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기준도 포함되어 있으나, 통상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중기재정계획상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제외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 이용자 등에 대한 판단을 하며 수단은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이 재정건전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대상으로 함

<표 4-17> 구조조정 대상사업의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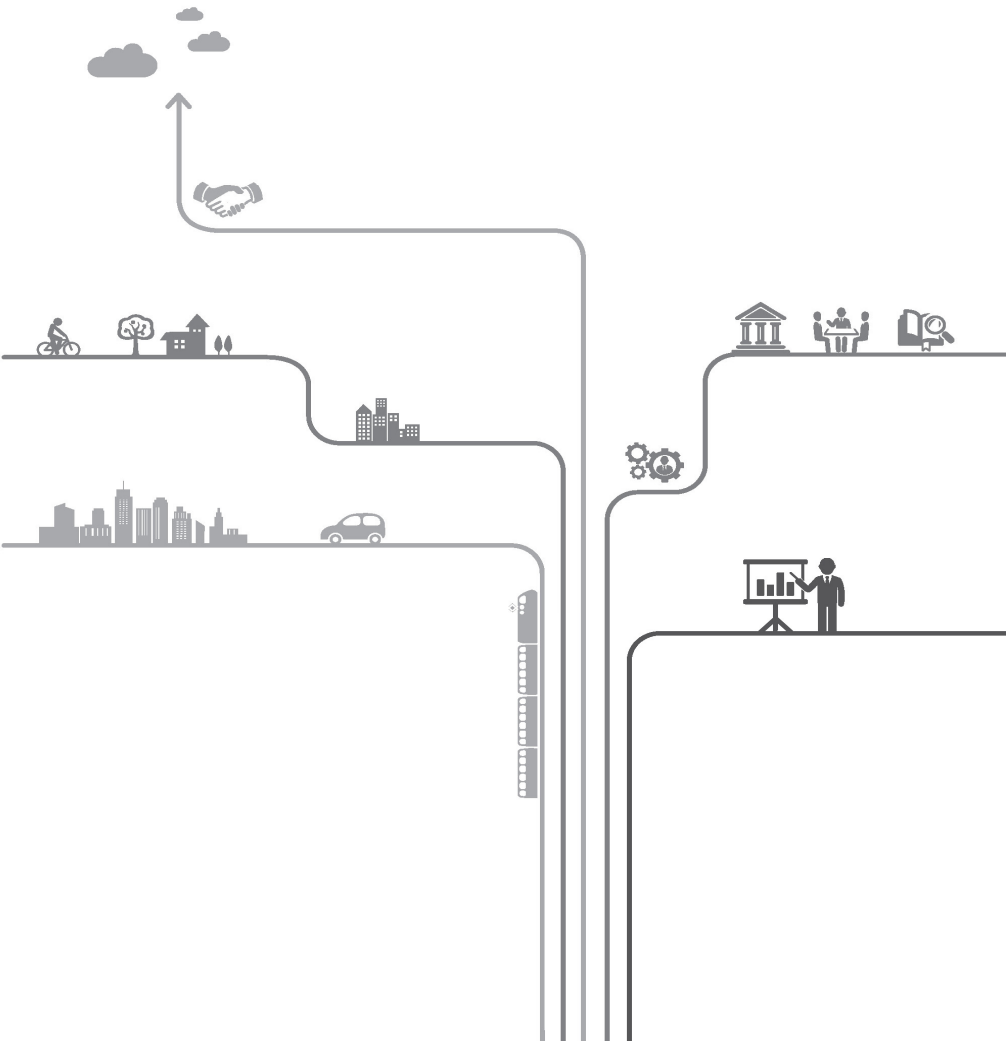
평가기준	착안사항
목표	- 사업목적이 명확한지(완료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수단	- 재원의 과다 사용 여부
유사·중복	- 동일 자치단체에 유사한 다른 사업은 없는지
보완기준	-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 이용자는 충분한지

- 이를 기초로, 존속, 재검토, 감축, 우선순위 재조정 등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함
 - 존속: 당초 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
 - 재검토: 중기재정계획에서 폐지하고 후에 재검토 함
 - 감축: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되, 축소규모는 10%에서 70% 사이에서 결정함
 - 우선순위 재조정: 동계올림픽이 완료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올림픽 개최 이전, 그리고 이후로 구분함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 본 연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의 재정운영을 보다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재정영향 분석, 세입증대 방안 그리고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였음
- 먼저 강원도의 재정은 지역경제상황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방법을 강구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지수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이는 각종 태풍, 장마, 산불 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누적되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의 비중 또한 높았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재정압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2011년 이후 강원도의 예산부족액은 2016년도에 가장 많은 2,600억원으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남
 - 이후 2017년도에 1,800억원, 2018년도 1,200억원, 2019년도에 1,200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인 2019년부터는 올림픽 개최시 건설했던 메인스타디움, 빙상 및 설상경기장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고려한다면 부족액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 또한 매년 증가하는 사업수요 대비 부족한 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200억원씩의 채무부담행위도 강원도의 재정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강원도에서는 세입증대 방안과 함께 세출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지만, 자체세입은 획기적인 재원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의존 재원은 올림픽 개최과정에서 야기된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장애가 나타나고 있음
 -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동개최 및 분산개최와 관련된 논의가 있음에도 단독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올림픽은 단독개최를 주장하면서 재원은 타 자치단체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재원은 과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원된 바 있는 재원을 탐색하는 방법임
 - 여기에는 옥외광고물센터 수입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이 있음
 - 이 중 옥외광고물센터 수입은 현재에도 동계올림픽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환경이 변화된 데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대 여지가 남아 있음
 -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은 현재의 지출항목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계올림픽 지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동계 올림픽 지원을 위한 외부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
- 또 다른 대안 탐색 방향은 강원도의 지출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지출항목 및 사업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현시점에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과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으로 이원화하여 대안을 탐색하였음

제2절 정책건의

1. 옥외광고물센터 수익 활용 방안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수익금 중 일부를 각종 국제대회와 지방자치단체 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센터 수입으로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3 충주세계박람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 세계물포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총 11개의 국제 행사에 지원하였음
- 그러나 옥외광고물센터 수익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원한 액수는 2013년 한번 밖에 없으며, 그 액수는 약 40억원임
 -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는 2009년부터 동 행사가 개최되는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총 149억원이 지원되었음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2009년부터 경기가 개최되는 2014년까지 매년 지원되었으며, 지원액수는 총 337억원임
-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은 행사가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이며, 옥외광고물센터 수입으로 지원되는 타 행사에 비해 작은 행사로 보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일회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 액수도 타 행사의 지원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기준은 2015년 9월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9월 이후에는 새로운 배분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견됨

-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는 신규 국제행사의 추가, 각 국제 행사별 예산규모의 변경 등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따라 수익금 배분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2011년 IOC에 제출한 유치신청서에는 8조 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2015년 현재 13조원으로 증대되었음
 - 이는 옥외광고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사유인 “예산규모의 변경 등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배분액 증대 가능성이 있음
- 수익금의 배분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총 1,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고 있음
 - 비록 배분기간은 국제행사가 끝나는 기간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동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이 지방채는 향후 10년 동안 상환해야 함
 - 그러므로 행사는 종료되었으나, 재정적으로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수익금의 배분기간 연장이 필요함
 - 따라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물 수익금의 배분은 배분액이 증대되어야 하고 배분기간도 연장될 필요가 있음

2. 체육진흥투표권 활용 방안

-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은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 투표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게임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체육진흥법 제22조)

- '01년~'06년 동안 조성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803억원은 2002 월드컵 개최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경기장건립비 상환에 사용된 바 있음
- 동 재원은 총액이 사전에 결정되는 재원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축소시킬 여지가 없음
 - 이로 인해 동계올림픽 단독 개최에 따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개입될 여지 또한 없음
- 현행법규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 현행 체육진흥법에서는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1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규정하고 있음
- 과거 동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국가적 체육행사를 지원한 바가 있어, 동 재원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활용하는게 다소 용이함
 -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으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월드컵 대회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가적 스포츠 행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도 국가적 스포츠행사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것임
-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큰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지원 규모도 제고될 필요가 있음

3. 예산지출 구조조정(인천시의 사례)

- 인천시의 경우도 강원도와 유사하게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많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2009년 2조 3,343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 3조 8,921억원으로 예상되었음
 - 2016년 이후에도 변제해야 할 지방채가 3조 6,065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
 - 그 결과 인천시는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있음
- 인천시에서의 구조조정 방식은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삭감방식은 개최 시점까지는 일괄삭감, 그리고 개최 이후에는 성과평가를 적용하였으며, 전략적 항목을 선정하여 10%에서 20%까지의 조정을 추진하였음
- 인천시에서 추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식은 몇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구조조정 대상이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며, 일괄삭감과 성과평가를 시기별로 차별화 하였다는 것임
 - 접근방법은 전략적 항목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인천시의 사례를 통해 판단할 때, 강원도에서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할 경우,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일괄삭감 또는 성과평가를 통해 조정하되, 전략적 항목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괄삭감을 할지 또는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성과평가가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접근방법은 전략적 종목을 선택하되, 먼저 운영경비와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규모는 5억원 이상의 재정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해 둘 부분은 주민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임

4. 사업 구조조정

-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재량사업,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 강원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 현재 기투자액이 없거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목적, 수단, 사업의 중복성 등을 기초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기초로, 존속, 재검토, 감축, 우선순위 재조정 등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존속: 당초 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
 - 재검토: 중기재정계획에서 폐지하고 후에 재검토 함
 - 감축: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되, 축소규모는 10%에서 70% 사이에서 결정함
 - 우선순위 재조정: 동계올림픽이 완료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올림픽 개최 이전 그리고 이후로 구분함
- 국가 및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강원도의 재정상황은 더욱 경직될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① 재정건전성을 객관적 시각에서 정확히,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② 차년도 지방재정 운용기조와 전략수립에 반영하며, ③ 이를 통하여 재정 위험의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④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재정건전성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리고 올림픽 이후의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하계올림픽 시설과 비교할 때, 동계올림픽 시설은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큰 반면 수익시설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기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음

- 하계올림픽 시설과 비교할 때, 동계올림픽 시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크지 않음
 -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데, 특히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은 위험성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극소수임
 - 따라서 동계올림픽 시설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 시설 이용자 수가 적은 특징이 있음
 - 둘째, 시설의 사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됨
 - 동계올림픽 시설 중 일부는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일례로 빙상경기장이나 슬라이딩 경기장은 냉각시설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전기사용료 등이 수반됨
 - 셋째, 상대적으로 산골지역에 입지하고 있음
 - 하계올림픽은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개최되지만 동계올림픽은 슬로프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산이 입지한 지역 즉,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개최해야 하는 특징이 있음
- 결과적으로 동계올림픽 시설은 산골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반해 시설운영비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관건임
 - 따라서 대회 종료 후 시설을 누가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수반되는지, 그리고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경직성을 얼마나 초래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참고문헌】

1. 강인재(2012), 통합 사업관리를 통한 재정사업의 성과제고, 지방재정.
2. 김두휘(2012),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에 관한 연구, 스포츠 과학논문집.
3. 김명희(2011), 인천시 재정위기와 아시안게임, 월간 복지동향.
4. 김주영(2013), 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강원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
에의 시사점, 한국지방자치연구.
5. 류천훈·강주훈·배주한(2013),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실증분석,
관광·레저연구.
6. 문상일(2014), 스포츠 경기장 사후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7. 박노옥(2013), 지속가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재정포럼.
8. 박민정(2012),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와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의 관계연구: 지방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9. 박영옥(2011), 특집: 스포츠평토티 레저세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스포츠강국의
근간은 체육재원이다, 스포츠과학.
10. 박진경(2001), 2010 동계올림픽 시설 건설의 기본방향 및 사후 활용방안,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11. 박진경·박명숙·태혜신(2014),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올림픽레저지와 경기장
시설 사후 활용방안,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12. 원광희(2011),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효과 제고를 위한 중부내륙권 연계협력
방안,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13. 원광희(2011),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중요성;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효과 제고를 위한 중부내륙권 연계협력방안, 균형발전.
14. 이동훈(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의 성과와 과제; 밴쿠버동계올림픽의 의미와 성과,
스포츠과학.
15. 이상대·김옥연·노춘희(1999),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 연구, 경기
개발연구원 기본연구.

16. 이상대·지우석·이수진·박신영(2011),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한 지역상생 발전방안, 정책연구.
17. 전진근(2011), 올림픽 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국토(구 국토정보다이제스트).
18. 정태옥(2011), 2011년도 인천광역시 건전성·효율성 운용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8호.
19. 진형주(2013),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다. 이 넓은 경기장을“이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20. 차미숙(2011),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추진방안, 국토(구 국토정보다이제스트).
21. 최병호·이근재(2014), 지방재정지출승수와 지방세출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 한국지방재정학회지, 제19권 제2호.
22. 한기복(1988), 서울올림픽 이후의 지방행정: 서울올림픽 이후의 체육, 지방행정.